

農漁民 經濟教育의 現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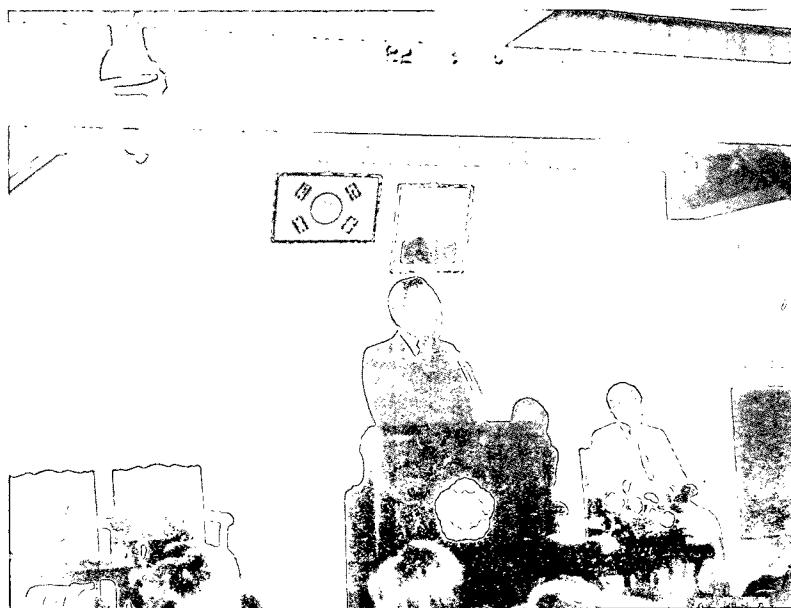
1983.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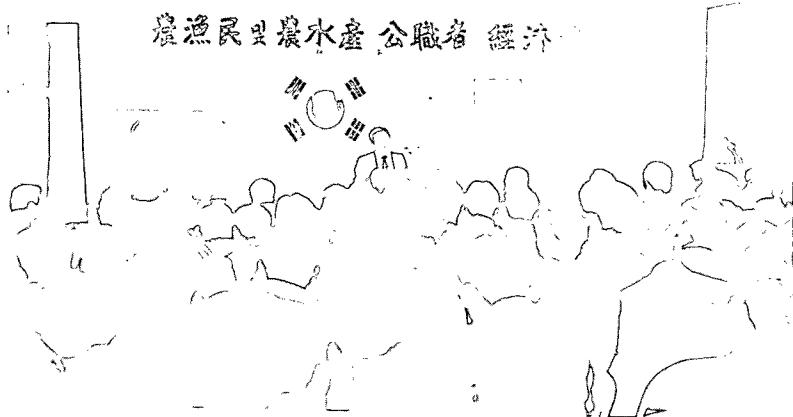
면

경제 교육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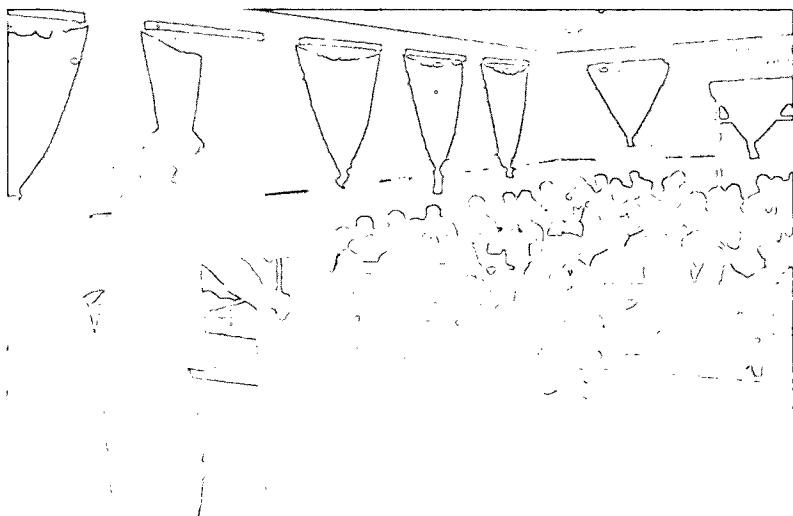


金甫炫 院長의 特講場面

경제 교육의 현장



京畿道 楊平郡의 郡單位 集合教育



全北 金堤郡의 郡單位 集合教育

경제 교육의 현장



잠시 일손을 멈추고 강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락민들



밤 時間을 利用한 사랑방 座談教育

빈

면

머리말

'60年代 이후의 高度成長 위주의 政策運用方式은 1979年 4月 經濟安定化施策이 公表됨으로써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우리 經濟가 처한 國內外 與件의 變化로 보아 經濟의 安定化는 國家的인 必須課題로 대두되었으며 우리 經濟의 規模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企業家, 農漁民, 勞動者, 家計 등 全國民의 理解와 協調가 效果的인 經濟施策 推進의 필수요건으로 제기되게 된 것이다.

1980年末 全斗煥大統領閣下의 主唱으로 點火된 國民經濟教育은 그 동안 國民 各階各層에 확산되어 이제 汎國家的 事業으로 發展하고 있다. 나라 經濟가 처해 있는 狀況과 問題點을 그때 그때 國民들에게 알리고 政策에 대한 國民의 理解와 自發的인 協調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經濟施策의 問題가 아니라 開放과 自律로 上징되는 第5共和國 國政理念의 한 反映이기도 하다.

그동안 各界에서 精力的으로 推進한 對國民經濟教育으로 國民들은 政府의 經濟施策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잘 理解하게 되었으며 政策에 대한 國民의 理解는 自發的인 協調를 불러와 이제 우리 經濟는 史上 類例가 없는 物價安定과 安定成長의 基盤을 확고하게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農漁村 經濟問題를 研究하는 機能上의 使命感과 時代의 召命意識으로 國民經濟教育에 參與하여 1982年 初부터 對農漁民經濟教育을 실시해 오고 있다. 當院의 研究陣이 研究事業의 延長으로 지난 2년동안 農漁村 現場과 講議室, 新聞, 放送, TV 등 매스컴을 통해 推進해온 經濟教育 狀況을 記錄으로 整理해 보는 뜻에서 이 작은 冊子를 엮어 보았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도 對農漁民經濟教育에 加一層 奮發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時間을 對農漁民 經濟教育活動에 할애하면서도 本然의 研究事業을 充實히 遂行하여 주신 職員여러분께 感謝를 드린다.

1983. 1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甫炫

目 次

머 리 말

I. 教育實施 概要	1
1. 教育의 背景	1
2. 主要 教育內容	1
3. 教育 方法	2
4. 教育教材 發刊	3
II. 1982 年度 教育實績	4
1. 群單位 集合教育	4
2. 夏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10
3. 秋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15
4. 機關 出講教育	20
5. 大衆媒體를 통한 教育弘報	22
III. 1983 年度 教育實績	26
1. 冬季 營農教育時 出講教育	26
2. 農漁民 現地 通信員 教育	31
3. 夏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33
4. 秋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36
5. 機關 出講教育	39
6. 大衆媒體를 통한 教育弘報	41
IV. 教育現場 所感	46
V. 農水產公職者 및 農漁民 經濟教育日誌	52
VI. 附 錄(教育教材)	55
나라 經濟와 農業問題	55
1983 年度 쌀 收買價格과 收買量	91

빈

면

I. 教育實施 概要

1. 教育의 背景

世界經濟 속에서의 國民經濟의 與件과 나라살림의 實相을 教育함으로써 經濟問題에 대한 農漁民의 認識提高와 經濟的 生活感覺을 높이는 同時에 當面 農政施策에 대한 時代的 當爲性, 施策의 背景 등을 올바르게 理解시킴으로써 農漁民의 國民的 參與意識 提高와 自主的 營農活動에 寄與하고자 研究事業의 延長活動으로 1982年初부터 農漁民 經濟教育 事業에 參與하고 있다.

2. 主要教育 内容

教育의 主要 内容은 汎國民的으로 推進되고 있는 經濟教育에 발맞추어 世界經濟속에서의 우리 經濟가 정한 全般的인 與件을 理解시키는 한편 나라의 經濟施策과 農漁村 經濟의 相互關係 등을 教育함으로써 經濟問題에 대한 農漁民의 認識提高와 農政施策에 대한 理解增進 및 營農參與 意識을 높이는 데 重點을 두었다.

主要 教育 科目으로는 우리 經濟의 오늘과 來日, 物價安定과 食品價格 安

定의 必要性, 糧特赤字 및 肥料計定 赤字 解消의 必要性, 食糧節約과 食生活 改善, 農水產物 流通改善 및 複合營農의 必要性 등 農漁村 經濟와 直結 되는 當面課題에 重點을 두었다.

3. 教育方法

研究院이 實施하고 있는 經濟教育은 大別하여 市郡單位 集合教育, 마을單位 座談教育, 有關機關 出講教育, 通常 業務出張時의 面談教育 및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 大衆弘報 媒體를 通한 教育 등으로 區分 實施하였으며 弘報媒體를 除外한 現場教育은 主로 自體發刊한 教育教材를 活用하였다

가. 郡單位 集合教育

1982.3.16 부터 6.3 까지 약 3個月間에 걸쳐 全國 各郡別로 3人1組로 構成된 講士陣을 現地에 派遣하여 巡迴教育을 實施하였으며 副院長을 비롯한 各 研究委員 및 首席研究員 全員이 教育에 參與하였고 院長도 數次에 걸쳐 特講을 實施하였다.

本教育은 農水產部와 內務部 그리고 現地 行政機關의 頑張적인 協助下에 實施되었으며 指導層 農漁民 및 農水產 公職者를 對象으로 하였다.

나. 部落單位 座談教育

1982 年과 1983 年度 共히 年 2 回씩 一定期間 職員을 農漁村에 보내어 마을의 사랑방 또는 일터에서 나라經濟와 農政施策, 農漁民의 生活이야기 등 격의없는 對話를 통하여 서로 배우고 理解하는 現場教育을 實施하였다.

다. 冬季 營農教育時 出講教育

1983 年 1 ~ 2 月中에 農村振興廳이 實施한 겨울 營農教育 學區單位 教育時 各市郡에 講士要員을 派遣하여 經濟教育을 實施하였다.

라. 現地通信員 教育

研究院에서 各 市郡農村指導所長의 추천을 받아 委嘱한 農漁民 現地通信員 2,000 名을 對象으로 農漁村 輿論調查를 兼한 經濟教育을 實施하였다.

마. 弘報媒體를 통한 大衆教育

當面 農漁村 經濟問題 및 主要 農政 施策에 대한 教育 弘報를 農漁民 뿐만 아니라 全國民을 對象으로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을 통하여 教育弘報事業을 年中 實施하였다.

바. 通常 業務出張時 面談教育

研究院의 調查研究事業 遂行을 위한 現地調査 出張時 調査業務와 併行한 教育任務를 부여하여 1982 年度에 1,188 名, 1983 年度에 延 261 個市郡 6,882 名에 대하여 調査業務는 물론 當面 農政施策에 대한 教育을 實施하였다.

4. 教育教材 發刊

教 材 名	發 刊 日 字	部 數	配 布 및 活 用
1. 나라經濟와 農漁村 살림	'82. 3.13	2,000	全國 市·郡 行政機關 및 農村指導所
2. 養豚不況의 原因과 對策 및 보리增產의 必要性	'82. 9.25	200	自體教官要員用
3. 農政施策과 農漁村 살림	'83. 1.13	5,000	全國 市·郡 行政機關 및 農村指導所
4. 複合營農의 現場	'83. 7. 5	1,000	農振廳 및 市·郡 農村指導所
5. 나라經濟와 農業問題	'83. 8.17	1,000	全國 56 個郡 農民代表
6. '83 省 收買價格과 收買量	'83.10.30	500	"

II. 1982年度 教育實績

1. 郡單位 集合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市 郡 數	教 育 人 員 數
京 畿	28	4,515
江 原	21	3,660
忠 北	13	1,624
忠 南	16	2,304
全 北	18	3,046
全 南	27	4,554
慶 北	30	4,500
慶 南	26	3,401
濟 州	4	302
計	183	27,906

나. 細部教育 實績

道 郡 名	日 字	教 育 場 所	教 育 實 績	備 考 (包含地域)
京畿道				
김포군	3.16	한강농조회의실	192	
강화군	3.17	군 청 회 의 실	177	
옹진군	3.18	"	151	부천시
시흥군	3.19	"	257	안양, 반월, 광명시
고양군	3.22	"	930	
용인군	3.23	"	157	
평택군	3.24	"	168	송탄시
안성군	3.25	안성단협회의실	150	
광주군	3.26	군 민 회 관	202	성남시
이천군	3.29	군 청 회 의 실	150	
여주시	3.30	"	417	
화성군	3.31	"	180	수원시
남양주시	4. 2	"	176	
가평군	4. 2	"	152	
양주군	4. 6	"	243	동두천, 의정부시
포천군	4. 7	군 청 복 지 관	208	
연천군	4. 8	군 청 회 의 실	229	
파주군	4. 9	"	222	
양평군	4.10	"	154	
江原道				
홍천군	3.16	군 청 회 의 실	171	
횡성군	3.17	"	170	
원성군	3.18	원주카톨릭센타	287	원주시
평창군	3.19	평창문화관	216	
영월군	3.22	군 청 회 의 실	180	
정선군	3.23	"	183	
태백시	3.24	시 청 회 의 실	160	
동해시	3.25	교육청 회 의 실	138	
삼척군	3.26	농 민 회 관	226	
강릉시	3.29	명주군청회의실	203	명주군
양양군	3.30	군 청 회 의 실	236	
속초시	3.31	시 청 회 의 실	180	

道 郡 名	日 字	教 育 場 所	教 育 實 績	備 考 (包 含 地 域)
고 성 군	4. 1	군 청 회 의 실	185	
인 제 군	4. 2	"	195	
양 구 군	4. 6	교 육 청 회 의 실	160	
춘 성 군	4. 7	시 립 문 화 관	356	
화 천 군	4. 8	화 천 문 화 관	171	
철 원 군	4. 9	철 원 문 화 관	242	
忠清北道				
청 원 군	3.22	군 청 회 의 실	203	청 주 시
보 은 군	3.23	군 문 화 원	162	
진 천 군	3.24	읍 사무 소 회 의 실	153	
괴 산 군	3.25	남 산 단 협 회 의 실	160	
음 성 군	3.25	음 성 읍 사무 소	190	
옥 천 군	3.29	군 청 회 의 실	151	
영 동 군	3.29	영 동 문 화 원	155	
중 원 군	3.30	충 주 향 운 회 관	148	청 주 시
제 원 군	3.31	시 청 회 의 실	152	제 천 시
단 양 군	3.31	군 청 회 의 실	150	
忠清南道				
천 원 군	3.16	천 안 시 청 회 의 실	201	
아 산 군	3.17	온 양 문 화 원	150	
당 진 군	3.18	군 청 회 의 실	158	
서 산 군	3.19	"	200	
홍 성 군	3.22	"	150	
예 산 군	3.23	"	150	
청 양 군	3.24	"	104	
보 령 군	3.25	"	150	
서 천 군	3.26	"	157	
논 산 군	3.29	"	200	
부 여 군	3.30	"	164	
공 주 군	3.31	"	151	
대 덕 군	4. 1	대 전 시 청 회 의 실	150	대 전 시
연 기 군	4. 2	조 치 원 문 화 원	100	
금 산 군	4. 3	군 청 회 의 실	119	

道 郡 名	日 字	教 育 場 所	教 育 實 績	備 考 (包含地域)
全羅北道				
완 주 군	4.13	군 청 회 의 실	280	전주시
김 제 군	4.14	"	275	
부 안 군	4.15	"	181	
정 읍 군	4.16	"	270	정주시
고 창 군	4.19	"	217	
옥 구 군	4.20	"	174	군산시
익 산 군	4.21	"	310	이리시
임 실 군	4.22	"	184	
남 원 군	4.23	"	268	남원시
순 청 군	4.29	"	235	
진 안 군	4.26	진안군지도소회의실	255	
장 수 군	4.27	군 청 회 의 실	150	
무 주 군	4.28	무주군문화관	247	
全羅南道				
담 양 군	4.13	군 청 회 의 실	233	
장 성 군	4.14	군 민 회 관	226	
광 산 군	4.15	군 청 회 의 실	288	광주시
영 광 군	4.16	농촌지도소강당	260	
함 평 군	4.19	군 청 회 의 실	200	
무 안 군	4.20	"	162	
신 안 군	4.21	복 지 회 관	207	목포시
영 암 군	4.22	군 청 회 의 실	201	
해 남 군	4.22	"	178	
완 도 군	4.26	"	154	
진 도 군	4.27	군 민 회 관	198	
강 전 군	4.28	군 청 회 의 실	180	
장 흥 군	4.29	"	214	
보 성 군	4.30	복 지 회 관	285	
고 흥 군	5. 3	군 청 회 의 실	170	
승 주 군	5. 4	"	258	순천시
여 천 군	5. 6	"	231	여수시
광 양 군	5. 7	"	179	
구 례 군	5.10	교육 청 회 의 실	150	
곡 성 군	5.11	군 청 회 의 실	185	
화 순 군	5.12	산업 증 산 관	182	
나 주 군	5.13	금 성 관	213	금성시

道 郡 名	日 字	教育場所	教育實績	備考(包含地域)
慶尙北道				
달 성 군	4.13	군 청 회 의 실	156	
칠 곡 군	4.13	"	165	
선 산 군	4.14	"	180	구미시
금 릉 군	4.15	"	179	김천시
상 주 군	4.16	"	155	
문 경 군	4.19	"	226	
예 천 군	4.20	"	224	
영 풍 군	4.21	"	242	영주시
봉 화 군	4.22	"	201	
안 동 군	4.23	"	206	안동시
청 송 군	4.26	"	226	
영 양 군	4.27	"	203	
의 성 군	4.28	"	231	
군 위 군	4.29	"	225	
경 산 군	4.30	"	221	
청 도 군	5. 3	"	213	
영 천 군	5. 4	"	176	영천시
월 성 군	5. 6	"	167	경주시
영 일 군	5. 7	"	201	포항시
영 덕 군	5.11	"	213	
울 진 군	5.12	"	169	
고 령 군	5.13	"	171	
성 주 군	5.14	"	150	
慶尙南道				
진 양 군	4.13	군 청 회 의 실	163	진주시
산 청 군	4.14	"	145	
함 양 군	4.15	농 민 회 관	151	
거 제 군	4.16	"	155	
합 천 군	4.19	군 청 회 의 실	158	
창 령 군	4.20	음 민 회 관	322	
밀 양 군	4.21	농 민 회 관	243	
김 해 군	4.22	군 청 회 의 실	157	김해시
양 산 군	4.23	교 육 청 회 의 실	159	
울 주 군	4.26	군 청 회 의 실	211	울산시
의 창 군	4.27	"	175	마산시

道 郡 名	日 字	教 育 場 所	教 育 實 績	備 考 (包含地域)
창 원 군	4.28	진해 시청 회의실	155	진해시
통 영 군	4.29	"	157	충무시
거 제 군	4.30	농 민 회 관	166	
고 성 군	5. 3	군 청 회 의 실	222	
사 천 군	5. 4	사 천 읍 공 관	200	삼천포시
하 동 군	5. 6	군 청 회 의 실	155	
남 해 군	5. 7	"	150	
함 안 군	5. 8	가 야 읍 회 의 실	157	
濟 州 道				
북 제 주 군	5.11	군 청 회 의 실	152	
남 제 주 군	5.12	"	150	

2. 夏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郡 數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京 畿	17	102	204	5,148
江 原	12	55	108	1,806
忠 北	7	39	76	898
忠 南	11	53	106	2,844
全 北	8	36	71	1,741
全 南	16	80	160	3,418
慶 北	18	85	170	2,409
慶 南	16	75	141	1,846
計	105	525	1,036	20,110

나. 細部教育 實績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京畿道				
양주군	3.17~3.27	장흥면외 5개면	12	119
남양주군	3.17~3.26	진건면외 5개면	12	198
평택군	3.17~3.26	평성읍외 5개면	12	395
양평군	3.27~4. 5	양평읍외 5개면	12	214
이천군	"	백사면외 5개면	12	439
용인군	"	수기면외 5개면	12	209
안성군	3.26~4. 4	보개면외 2개면	6	87
광주군	3.19~3.27	초월면외 5개면	12	164
연천군	3.17~3.26	신서면외 5개면	12	258
포천군	3.17~3.27	가산면외 5개면	12	376
가평군	3.17~3.26	의서면외 5개면	12	644
화성군	3.19~3.27	봉담면외 5개면	12	1,165
시흥군	3.17~3.27	수암면외 5개면	12	111
파주군	3.17~3.26	조리면외 5개면	12	142
여주군	"	점동면외 5개면	12	213
김포군	3.26~4. 4	점단면외 5개면	12	146
강화군	"	길상면외 5개면	12	160
江原道				
춘성군	3.24~4. 2	신북면외 5개면	12	298
홍천군	3.27~4. 5	동면외 5개면	12	194
횡성군	3.27~4. 5	갑천면외 5개면	12	134
원성군	"	문막면외 2개면	6	62
평창군	"	진부면외 5개면	12	120
철원군	4.10~4.19	갈말읍외 2개면	6	68
화천군	"	화천읍외 1개면	6	142
정선군	4. 7~4.13	정선면외 2개면	6	84
고성군	4. 6~4.16	현북면외 2개면	6	54
양양군	"	죽왕면외 1개면	6	69
명주군	4. 6~4.15	연곡면외 5개면	12	321
삼척군	"	주노면외 5개면	12	260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忠淸北道				
청 원 군	4. 6 ~ 4.15	현도면외 5 개면	14	106
옥 천 군	4. 7 ~ 4.16	이원면외 5 개면	12	88
영 동 군	4. 6 ~ 4.15	학산면외 5 개면	12	132
진 천 군	"	진천읍외 6 개면	12	162
괴 산 군	"	괴산읍외 5 개면	12	232
제 원 군	4. 7 ~ 4.16	금성면외 5 개면	12	118
단 양 군	5.14 ~ 5.27	영준면외 1 개면	4	60
忠淸南道				
대 덕 군	4.12 ~ 4.22	탄 동외 2 개면	6	416
대 전 시				
예 산 군	4.13 ~ 4.22	예 산읍외 5 개면	12	162
서 산 군	"	서 산읍외 2 개면	6	39
연 기 군	"	전 동면외 5 개면	12	166
공 주 군	"	우 성면외 5 개면	12	253
부 여 군	"	규 암면외 5 개면	12	156
보 령 군	4.11 ~ 4.20	청 라면외 5 개면	12	186
청 양 군	"	운 곡면외 5 개면	12	202
아 산 군	4.15 ~ 4.24	송 악면외 5 개면	12	274
천 원 군	4.22 ~ 4.29	성 남면외 4 개면	10	990
全羅北道				
완 주 군	4.22 ~ 4.29	조 촌면외 2 개면	6	59
진 안 군	"	마 렁면외 1 개면	4	61
남 원 군	"	이 백면외 4 개면	10	128
정 읍 군	4.22 ~ 4.29	덕 친면외 4 개면	10	680
고 창 군	"	고 창읍외 4 개면	10	220
부 안 군	"	하 서면외 5 개면	11	349
김 체 군	5. 3 ~ 5.10	광 할면외 4 개면	10	95
익 산 군	"	횡 등면외 4 개면	10	149
全羅南道				
강 진 군	4. 8 ~ 4.17	칠 량면외 5 개면	12	190
완 도 군	"	대 구면외 4 개면	10	127
광 양 군	4.12 ~ 4.23	진 상면외 5 개면	12	382
담 양 군	5. 3 ~ 5.10	금 성면외 4 개면	10	131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구 레 군	5. 3~5.10	문척면의 4개면	10	104
곡 성 군	"	죽산면의 4개면	10	138
승 주 군	"	황전면의 4개면	10	593
보 성 군	"	보성읍의 4개면	10	167
영 암 군	5. 7~5.14	미암면의 4개면	10	199
장 흥 군	"	관산면의 4개면	10	188
무 안 군	5.11~5.18	동단면의 4개면	10	254
나 주 군	5.11~5.18	금천면의 4개면	10	122
합 평 군	5. 8~5.15	엄다면의 4개면	10	187
영 광 군	5.11~5.18	영광읍의 4개면	10	298
장 성 군	5.11~5.18	동화면의 2개면	6	70
해 남 군	5. 7~5.14	옥천면의 4개면	10	168
慶尙北道				
선 산 군	5. 3~5.10	고아면의 3개면	8	129
영 천 군	"	북안면의 4개면	10	99
청 도 군	"	각북면의 5개면	12	106
달 성 군	5.11~5.18	현풍면의 5개면	12	122
군 위 군	"	군위읍의 4개면	10	244
청 송 군	5.17~5.24	부남면의 4개면	10	97
영 양 군	5.14~5.21	수비면의 4개면	10	115
영 덕 군	5.17~5.24	영덕읍의 4개면	10	97
영 일 군	5.14~5.21	의창읍의 4개면	10	237
월 성 군	"	현곡면의 4개면	10	334
경 산 군	"	남산면의 4개면	10	66
고 령 군	"	고령읍의 4개면	10	221
봉 화 군	"	봉화읍의 2개면	6	79
영 주 군	"	순흥면의 2개면	6	89
상 주 군	5.27~6. 3	미안면의 4개면	10	159
문 경 군	"	점촌읍의 3개면	8	35
예 천 군	"	용궁면의 3개면	8	56
울 주 군	"	온양면의 4개면	10	43
慶尙南道				
진 양 군	5.27~6. 3	금곡면의 4개면	7	68
함 안 군	"	가야면의 4개면	10	98
창 넝 군	"	대지면의 4개면	10	135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밀 양 군	5.27~6. 3	산의면외 4 개면	10	66
김 해 시	5.26~6. 2	아북동외 3 개동	8	90
의 창 군	5.27~6. 3	진동면외 3 개면	7	80
거 제 군	5.26~6. 2	연초면외 4 개면	10	184
통 영 군	5.27~6. 3	도산면외 4 개면	10	140
고 성 군	"	고성읍외 3 개면	8	98
사 천 군	5.28~6. 3	사천읍외 4 개면	10	66
남 해 군	5.27~6. 3	상동면외 4 개면	10	90
하 동 군	"	신교면외 4 개면	10	130
산 청 군	"	산청읍외 4 개면	5	53
함 양 군	"	백천면외 4 개면	10	62
거 창 군	"	아리면외 3 개면	8	378
합 천 군	"	월곡면외 3 개면	8	108

3. 秋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郡 數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京 畿	18	38	82	708
江 原	10	20	41	650
忠 北	8	17	30	351
忠 南	15	35	60	505
全 北	13	26	52	576
全 南	18	36	66	852
慶 北	23	46	92	916
慶 南	17	34	67	706
計	122	252	490	5,264

나. 細部教育 實績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京畿道				
고 양 군	9.28 ~ 10. 3	벽제읍 · 원당읍	5	26
파 주 군	"	조리면 · 광탄면	5	42
강 화 군	"	화도면 · 양도면	4	30
김 포 군	"	검단면 · 양촌면	4	32
가 평 군	"	설악면	5	50
포 천 군	"	신북면 · 군내면	6	73
양 평 군	"	개군면 · 양서면	4	37
남 양 주 군	"	미금읍 · 진군면	4	42
이 천 군	10. 3 ~ 10. 8	이천읍 · 부발면	3	34
용 인 군	"	용인읍 · 이동면	5	35
여 주 군	"	여주읍 · 농서면	6	21
광 주 군	"	초월면 · 실촌면	6	43
평 택 군	10. 4 ~ 10. 9	고덕면 · 오성면	4	34
안 성 군	"	안성읍 외 4개면	6	37
화 성 군	10.13 ~ 10.18	반월면 · 대안면	4	24
시 흥 군	"	수암면 · 남 면	3	16
양 주 군	"	주내면 · 회천면	4	72
연 천 군	"	전곡면 · 신서면	4	60
江原道				
양 양 군	9.28 ~ 10. 3	현남면 · 현북면	4	36
명 주 군	"	연곡면 · 왕산면	4	35
춘 성 군	10. 3 ~ 10. 8	신동면 · 신북면	5	35
홍 천 군	"	동 면 · 홍천읍	7	386
원 성 군	"	판부면 · 호저면	4	35
횡 성 군	"	횡성읍 · 공조면	4	29
정 선 군	"	남 면 · 북 면	4	25
삼 척 군	"	근덕면 · 원덕면	4	37
평 창 군	10.13 ~ 10.18	방령면 · 평창읍	2	17
영 월 군	"	북 면 · 남 면	3	15
忠清北道				
음 성 군	9.28 ~ 10. 3	소이면 · 음성읍	4	32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中 原 郡	9.28 ~ 10. 3	엄정면의 2개면	4	25
淸 原 郡	10.13 ~ 10.18	가덕면 · 남일면	4	71
保 遵 郡	"	회북면 · 수한면	4	84
丹 阳 郡	"	매포읍 · 단양읍	4	39
제 천 郡	"	한수면 · 봉양면	4	25
진 천 郡	"	초평면 · 진천읍	3	42
괴 산 郡	"	감돌면 · 문광면	3	33
忠淸南道				
천 원 郡	9.28 ~ 10. 3	옥천면 · 병천면	4	17
아 산 郡	"	영인면 · 영치면	4	19
대 덕 郡	"	동면 · 기성면 · 진잠면	4	38
금 산 郡	"	추부면 · 북수면	4	40
서 산 郡	10. 3 ~ 10. 8	해미면 · 운산면	4	30
당 진 郡	"	당진읍 · 송산면	4	24
논 산 郡	"	가야곡면의 2개면	4	52
부 여 郡	"	규암면 · 석성면	4	33
보 령 郡	"	남포면 · 주포면	4	21
홍 성 郡	"	금마면 · 동북면	4	18
청 양 郡	10. 13 ~ 10. 18	비봉면 · 화성면	4	38
예 산 郡	"	대술면 · 신양면	4	34
연 기 郡	"	전의면의 3개면	4	34
공 주 郡	"	장기면의 2개면	4	73
서 천 郡	"	마서면 · 서천읍	4	34
全羅北道				
임 실 郡	9.28 ~ 10. 3	임실읍 · 관촌면	4	57
정 읍 郡	"	신태안읍 · 경우면	4	58
익 산 郡	"	금마면 · 함열읍	4	70
완 주 郡	"	삼례읍 · 봉동면	4	27
무 주 郡	"	무주읍 · 적상면	4	28
진 안 郡	"	진안읍 · 부귀면	4	30
남 원 郡	10. 3 ~ 10. 8	주생면 · 주천면	4	37
장 수 郡	"	장수읍 · 계남면	4	36
부 안 郡	"	동진면 · 산내면	4	39
김 제 郡	"	죽산면 · 성덕면	4	36
순 창 郡	"	쌍치면 · 복흥면	4	67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고 창 군	10. 3~10. 8	고수면 · 아산면	4	41
옥 구 군	10.13~10.18	개정면 · 대야면	4	50
全羅南道				
나 주 군	9.28~10. 3	금성시외 2개면	4	57
승 주 군	"	해룡면 · 황전면	4	48
구 래 군	10. 3~10. 8	관수면	1	39
광 산 군	"	평동면	1	101
무 안 군	"	무안읍 · 청계면	4	44
영 암 군	"	덕진면 · 군서면	4	25
함 평 군	"	대동면 · 함평읍	4	45
영 광 군	"	군남면 · 묘량면	4	44
곡 성 군	"	상기면 · 곡성읍	4	42
화 순 군	"	화순읍 · 동면	4	40
해 남 군	"	화산면 · 현삼면	4	32
완 도 군	"	완도읍 · 군외면	4	29
광 양 군	"	광양읍 · 봉강면	4	67
여 천 군	"	화양면 · 소라면	4	47
강 진 군	10.13~10.18	강진읍 · 성전면	4	68
장 흥 군	"	장흥읍 · 대덕읍	4	58
보 성 군	"	오동면외 2개면	4	34
고 흥 군	"	점암면 · 괴역면	4	32
慶尙北道				
군 위 군	9.29~10. 4	군위읍 · 효령면	4	41
의 성 군	"	단촌면 · 옥산면	4	42
안 동 군	9.30~10. 5	북후면 · 서후면	4	53
예 천 군	"	예천읍 · 하리면	4	23
달 성 군	9.29~10. 3	현풍면 · 유가면	4	48
청 송 군	10. 3~10. 8	진보면 · 청송읍	4	26
영 양 군	"	영양읍 · 청기면	4	37
월 성 군	"	양남면 · 양북면	5	69
영 일 군	"	오천읍 · 대송면	4	40
경 산 군	10. 3~10. 8	압량면 · 경산읍	4	49
청 도 군	"	각남면 · 풍락면	4	27
영 천 군	"	금호읍 · 화북면	4	11
칠 꼭 군	"	북삼면 · 약목면	3	16

道 郡 名	實施期間	邑 面 數	部落數	教育人員
봉화군	10. 3~10. 8	봉성면 · 물아면	4	65
영풍군	"	단삼면 · 안경면	4	52
울진군	10. 13~10. 18	평해읍 · 북면	4	36
영덕군	"	축산면 · 창수면	4	42
금릉군	"	농소면 · 남면	4	30
선산군	"	선산읍 · 고아면	4	38
성주군	"	선남면 · 성주읍	4	45
보령군	"	보령읍 · 성산면	4	44
문경군	"	명순면 · 산양면	4	46
상주군	"	사벌면 · 상주읍	4	36
慶尙南道				
남해군	9. 28~10. 3	남면	4	52
의창군	"	동면 · 대산면	4	40
함안군	"	법수면 · 가야면	4	46
산천군	10. 3~10. 8	곤양면 · 사초면	4	67
하동군	"	진교면 · 청암면	4	56
통영군	10. 6~10. 11	산양면 · 용남면	4	31
거제군	"	신현읍 · 연초면	4	35
함양군	10. 3~10. 8	병곡면의 2개면	4	24
산청군	"	생초면 · 오부면	3	69
거창군	10. 13~10. 18	남상면 · 거창읍	4	40
합천군	"	합천읍 · 쌍백면	4	44
창녕군	"	영산면 · 부곡면	4	14
의령군	"	가례읍 · 의령읍	4	12
양산군	"	동면 · 양산면	4	56
울주군	"	청량면 · 온양면	4	40
고성군	"	상리면 · 거류면	4	41
진양군	"	정촌면 · 문산면	4	39

4. 機關 出講教育

日字	機 關 名	教育對象	教育人員	教 育 內 容
1. 21	축 협 중 앙 회	임 직 원	145	우리경제의 오늘과 내일
1. 29	농 진 공 연 수원	연 수 생	170	경제성장과 우리의 자세
2. 5	군산배합사료공장	교 육 생	200	배합사료의 공장경영
2. 11	지 방 행 정 연수 원	연 수 생	30	농촌개발
2. 16	농 촌 진 흥 청	공 무 원	110	국민경제와 농업문제
2. 16	Y M C A	농촌지도자	100	국민경제와 농민의 역할
2. 17	지 방 행 정 연수원	연 수 생	30	농촌개발
2. 17	농 진 공 연 수원	"	170	경제성장과 우리의 자세
2. 26	농 협 중 앙 회	공 직 자	200	생산공급 이론과 농업
3. 5	농 수 산 부	"	200	수요가격 이론과 농업
3. 16	수 협 중 앙 회	임 직 원	100	경제성장과 우리의 자세
3. 19	교통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3. 19	체신공무원연수원	"	200	"
3. 22	수 협 중 앙 회	임 원	50	경제성장과 우리의 자세
3. 24	이 화 여 대	학 생	100	우리 농업 여건과 식생활 개선
3. 30	"	임 직 원	100	경제성장과 우리의 자세
4. 5	체신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4. 14	농 협 중 앙 회	임 직 원	150	나라살림과 농촌개발
4. 20	언론연구원	"	100	한국농업 발전론
5. 10	문교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200	우리경제의 오늘과 내일
5. 14	"	"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5. 17	농업공무원연수원	"	100	"
5. 24	체신공무원연수원	"	15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5. 29	가나안농군학교	교 육 생	50	사회복지제도와 농업재해보험
6. 4	문교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300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6. 11	법무공무원연수원	"	25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6. 19	한국토지개발공사	임 직 원	100	한국경제의 미래상
6. 21	농업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6. 24	"	"	200	"
6. 28	"	"	200	"
6. 28	체신공무원교육원	"	200	"
7. 1	교통공무원교육원	"	200	"
7. 1	농업공무원교육원	"	200	"
7. 5	"	"	200	"

日字	機關名	教育對象	教育人員	教 育 内 容
7. 8	교통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7. 12	체신공무원교육원	"	400	"
7. 13	한국마사회	임 직 원	150	한국경제의 주요과제와 전망
7. 19	체신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4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7. 20	한국금융연수원	연 수 생	250	우리경제의 현실과 과제
7. 23	"	"	250	"
8. 10	체신공무원연수원	"	4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8. 18	노동공무원연수원	"	200	국민경제 윤리와 국민의 자세
8. 19	체신공무원연수원	"	4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8. 23	법무부연수원	"	300	"
8. 23	농업공무원연수원	"	200	"
8. 24	중앙교육연수원	"	120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8. 26	교통공무원연수원	"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8. 31	한국금융연수원	"	200	우리경제의 현실과 과제
9. 2	교통공무원연수원	"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9. 3	중앙교육연수원	"	300	한국경제
9. 9	교통공무원연수원	"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9. 14	수협연수원	"	12	한국의 수산업 현황
9. 16	교통공무원연수원	"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9. 23	"	"	200	"
9. 24	"	"	150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10. 4	체신공무원연수원	"	4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0. 11	중앙교육연수원	"	150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10. 14	체신공무원연수원	"	45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0. 15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임 직 원	150	농업경제의 과제
10. 21	교통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0. 22	가족계획연구원	임 직 원	150	인구와 식량 및 에너지 수급
10. 25	농업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0. 27	감사원	공 무 원	150	정부양곡 관리제도 개선방안
10. 28	교통공무원교육원	연 수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0. 29	서울대농대	학 生	400	미가정책과 소농발전 방향
11. 2	체신공무원연수원	연 수 생	4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1. 4	교통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200	"
11. 5	법무연수원	연 수 생	200	"
11. 18	교통공무원교육원	교 육 생	200	"
11. 19	"	"	100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11. 26	법무연수원	연 수 생	200	'80년대 경제정책 방향
12. 7	농촌진흥청	교 육 생	239	나라살림과 농어촌 경제
72 회			14,226	

5. 大衆媒體를 통한 教育弘報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新 聞	2. 13	농 민 신 문	홍수출하와 계통출하
	2. 20	"	인플레의 정체
	2. 27	"	경제와 이기주의
	3. 6	"	포장육 판매 유통 질서
	3. 13	"	석유와 스태그플레이션
	3. 20	새 마을 신문	인플레이션과 그 영향
	"	대 전 일 보	나라경제와 농어촌 살림
	3. 24	충 청 일 보	"
	3. 25	경 인 일 보	물가안정이 최선의 처방
	3. 26	"	농촌경제의 주요과제
	3. 27	새 마을 신문	외미도입과 식량증산
	4. 1	매일경제신문	이동과 증산
	4. 3	새 마을 신문	농가경제와 보리의 중요성
	4. 6	경 향 신 문	식량절약, 식생활 개선
	"	동 아 일 보	"
	"	중 앙 일 보	"
	4. 7	매일경제신문	농민의식
	"	서 을 신 문	식량절약, 식생활 개선
	4. 9	매일경제신문	"
	4. 10	"	식량안보
	4. 10	새 마을 신문	식생활 개선 필요
	4. 14	전 북 신 문	국민경제의 오늘과 내일
	4. 17	새 마을 신문	농수산물 유통개선문제
	4. 18	독 서 신 문	식생활 개선
	4. 24	매일경제신문	농민의식
	"	새 마을 신문	어업경영의 개선점
	5. 8	새 마을 신문	물가지수와 현실감각
	5. 9	서 을 신 문	농촌여성 사회참여
	5. 15	새 마을 신문	영농 불편 신고제도
	5. 22	"	'80년대 우리 경제의 방향
	5. 29	"	'80년대 농촌개발과 농촌정주 생활권
	6. 9	매일경제신문	농지 임대차 제도
	"	중 앙 일 보	"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新 聞	6. 9	경 인 일 보	농지 임대차 제도
	6. 10	동 아 일 보	"
	"	조 선 일 보	"
	"	한 국 일 보	"
	6. 11	"	"
	6. 12	매일경제신문	"
	"	새 마을신문	농업재해보험(경제교실)
	6. 14	농수산신보	농지 임대차 제도
	6. 21	농 민 신 문	"
	7. 1	경 향 신 문	"
	7. 4	서 울 신 문	농업자원 개발과 가뭄극복
	7. 14	"	가뭄주기가 빨라졌다
	7. 15	"	농촌에도 양성화 혜택을
	7. 23	"	농업재해보험
	8. 18	한 국 일 보	양돈업 발전과 정책
	"	전 북 신 문	"
	"	강 원 일 보	"
	"	매일경제신문	"
	8. 19	한국경제신문	"
	8. 29	"	잊을 수 없는 사람들
	9. 12	"	"
	9. 25	서 울 신 문	추곡수매가격 결정
	10. 6	조 선 일 보	풍년 양정을 생각한다
	"	한 국 일 보	농지 면적 단위 조사
	10. 11	농수산신보	수산가공 문제점과 대책
	10. 18	농수산신보	농수산물 유통개선
	10. 20	한국경제신문	농수산물 관세정책
	10. 25	매일경제신문	추곡수매와 농정
	10. 27	동 아 일 보	추곡수매
	10. 29	서 울 신 문	바람직한 재벌상
	11. 4	매일경제신문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11. 8	농 민 신 문	농촌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 주자
	11. 12	서 울 신 문	산지 초기 개발
	11. 15	농 민 신 문	농산물 관세정책
	11. 22	" "	산지 초기 개발
	12. 9	서 울 신 문	농지기반 조성
	12. 27	농수산신보	한국의 농업정책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放 送	2. 12	KBS - 라디오	농촌의 식량소비 추세
		부산MBC 라디오	농산물 유통개선
	3. 25	MBC - TV	알뜰살림 교실
	4. 5	"	"
	4. 6	"	"
	4. 20	"	추곡 수매가
	4. 21	KBS - 라디오	농업기술 현대화
	4. 22	KBS - TV	식량손실 요인 및 절약방법
	8. 18	"	돼지고기 소비 촉진
	10. 26	MBC - TV	추곡수매
	10. 26	KBS - TV	"
	11. 11	"	산지초 지개발
	11. 12	MBC - TV	"
	1월호	축 산 전 흥	조합원의 이익 최대화에 초점
弘 報 誌	"	잡 사	잡업행정 최고
	"	조 달	식량증산 및 식생활 개선시책
	"	서 울 우 유	낙농업계의 진로
	"	월 간 양 돈	양돈업의 발전방향과 정책
	"	현 대 해 양	연근해어업의 개선방향
	1. 4	농수산 단신	경제이론과 현실
	2. 16	"	수요의 기초 개념
	2 월호	월 간 양계 지	양계 산업의 전망
	"	축 산 전 흥	농후사료 생산의 안정화
	3 월호	현 대 해 양	한국수산업의 문제
	"	농지개 량회보	우리경제의 오늘과 내일
	4 월호	축 산 전 흥	송아지 가격 상승과 합리농정
	"	현 대 농 업	농수산물 집배센타의 선행조건 과 대책
	5 월호	농 업 진 흥	서남해안 간척과 농경지 확장
	"	축 산 전 흥	축산업 협동조합의 제역할
	"	현 대 농 업	식생활 개선시책의 기본방향
	"	체 인 스 토 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 월호	제 지 계	산업공해와 한국경제
	"	체 인 스 토 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8월호	농 광	농산물 가격안정화사업
	"	농업진흥	농산물 공급과 가격안정
	"	현대농업	성장으로 이끄는 축산시책의 제언
	8. 16	농개공시장조사보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제 추진 방향
	8. 25	농산물 유통 정 보	협동조합 기능과 역할
	9월호	"	축산업의 단기전망
	"	새 어 민	협동조합과 어민
	"	체인스토어	농수산물 유통마진의 실상
	10월호	새 농 민	식량자원과 보리생산
	"	종합축산	쇠고기 논쟁의 재연

III. 1983年度 教育實績

1. 冬季營農教育時 出講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郡 數	學 區 數	教 育 人 員
京 畿	18	67	12,359
江 原	11	39	3,373
忠 北	10	35	6,410
忠 南	15	56	10,218
全 北	13	48	6,523
全 南	20	77	15,783
慶 北	23	76	11,216
慶 南	19	74	12,546
計	129	472	78,428

나. 細部教育實績

道 郡 名	邑 面 數	實 施 期 間	學 區 數	實 績	備 考
京畿道					
파주군	친현면, 탄현면	1.25 ~ 26	4	594	
이천군	호법면, 설성면	"	4	1,165	
평택군	팽성읍	"	4	711	
양평군	양동면	"	4	479	
강화군	양사면, 하점면	"	4	950	
여주시	여주읍외 2개면	1.27 ~ 28	4	680	
포천군	영중면, 소흘면	"	4	799	
가평군	하 면, 북 면	1.27 ~ 31	4	412	
김포군	고촌면, 점단면	1.27 ~ 28	4	688	
광주군	초월면	1.28	2	265	
고양군	벽제면	1.29 ~ 31	4	674	
양주군	백석면, 광적면	"	4	418	
안성군	공도면, 상죽면	"	4	878	
용인군	이동면, 월상면	"	4	1,094	
시흥군	군자면	2. 1 ~ 2	2	507	
화성군	동탄면, 오산읍	"	4	954	
남양주시	화도면, 수동면	"	3	671	
연천군	전곡면, 관신면	"	4	420	
江原道					
철원군	동송읍	1.25 ~ 26	5	384	
양구군	양구읍, 남 면	"	4	284	
정선군	임계면	"	2	125	
화천군	하남면, 상서면	1.27 ~ 28	5	451	
영월군	상동읍, 하동면	"	4	285	
인제군	기건면	"	3	251	
양양군	현북면, 현남면	1.29 ~ 31	4	412	
횡성군	횡성읍, 공근면	1.31 ~ 2. 1	4	466	
춘성군	남 면	2. 1	3	159	
고성군	토성면	2. 1 ~ 2	3	346	
원성군	문막면	2. 2	2	210	
忠清北道					
충주시	주덕면, 노은면	1.25 ~ 26	4	1,316	

道 郡 名	邑 面 數	實施期間	學區數	實 績	備 考
청 원 군	남일면의 2개면	1.26 ~ 27	4	328	
괴 산 군	청천면의 2개면	"	4	1,748	
음 성 군	삼성면, 대소면	1.27 ~ 28	4	803	
보 은 군	보은읍의 3개면	"	4	367	
진 천 군	초평면의 2개면	1.28 ~ 29	4	629	
제 천 군	덕산면, 백운면	1.29 ~ 31	2	140	
옥 천 군	청산면의 2개면	"	4	460	
단 양 군	매포면	2. 1 ~ 2	2	115	
영 동 군	심천면	2. 2	3	504	
忠淸南道					
대 덕 군	유성읍의 2개면	1.25 ~ 26	4	471	
청 양 군	청양읍의 3개면	"	4	785	
아 산 군	임하면의 3개면	"	4	530	
서 산 군	성연면의 3개면	"	4	931	
천 원 군	동면, 직산면	1.27 ~ 28	4	950	
금 산 군	추부면의 2개면	"	4	599	
보 령 군	천북면, 정천면	1.27	2	551	
당 진 군	송악면의 2개면	1.27 ~ 28	4	518	
부 여 군	옥산면, 석장면	1.28	2	406	
논 산 군	벌곡면의 3개면	1.29 ~ 31	4	617	
연 기 군	서면의 3개면	"	4	470	
예 산 군	삼교면의 2개면	"	4	867	
공 주 군	정안면의 3개면	2. 1 ~ 2	4	466	
서 천 군	마서면의 3개면	"	4	632	
홍 성 군	장곡면의 2개면	"	4	1,425	
全羅北道					
옥 구 군	옥구읍의 2개면	1.25 ~ 26	4	557	
무 주 군	적상면	"	3	327	
임 실 군	임실읍	"	4	578	
장 수 군	장수읍의 2개면	1.27 ~ 28	4	523	
김 제 군	공덕면의 2개면	"	4	609	
남 원 군	덕과면, 보절면	"	4	466	
부 안 군	상서면, 보안면	1.29 ~ 31	4	517	
순 창 군	순창읍, 풍산면	"	3	448	
진 안 군	동향면	"	4	475	

道 郡 名	邑 面 數	實 施 期 間	學 區 數	實 績	備 考
의 산 군	의산읍	2. 1 ~ 2	2	320	
고 창 군	아산면, 부안면	"	4	419	
정 읍 군	이평면, 태인면	"	4	711	
완 주 군	고산면, 비봉면	"	4	573	
全羅南道					
영 광 군	태마면, 법성면	1.25 ~ 26	4	868	
함 평 군	대동면, 나산면	"	4	1,293	
영 암 군	신북면의 2개면	"	4	1,088	
화 순 군	동 면, 남 면	"	4	878	
고 흥 군	도화면, 풍양면	"	4	912	
구 레 군	광의면, 간전면	"	4	550	
장 성 군	황룡면의 2개면	1.27 ~ 28	4	703	
무 안 군	청계면, 삼향면	"	4	544	
보 성 군	복내면의 2개면	"	4	780	
승 주 군	쌍암면	"	4	667	
광 양 군	봉강면의 2개면	"	4	1,178	
완 도 군	노화읍	1.28 ~ 29	4	587	
담 양 군	담양읍	1.29	1	108	
장 흥 군	용산면, 관산면	1.29 ~ 31	4	708	
여 천 군	화양면	"	4	537	
나 주 군	남평면, 금천면	"	4	1,244	
해 남 군	해남읍	1.31	4	793	
곡 성 군	석곡면, 목사동면	2. 1 ~ 2	4	875	
강 진 군	신진면, 성전면	"	4	990	
진 도 군	군내면	"	4	480	
慶尙北道					
달 성 군	옥포면	1.25 ~ 26	2	238	
영 풍 군	봉현면, 평온면	"	2	484	
문 경 군	문경읍, 점촌읍	"	6	893	
봉 화 군	물야면, 명호면	"	3	363	
선 산 군	선산읍, 도개면	"	4	582	
경 산 군	하양읍, 진량면	"	4	404	
영 양 군	영양면, 일월면	1.27 ~ 28	4	519	
예 천 군	보문면, 풍양면	"	2	199	
상 주 군	내서면, 이안면	"	5	554	

道 郡 名	邑 面 數	實 施 期 間	學 區 教	實 績	備 考
금릉군	남면, 감문면	1.27 ~ 28	4	470	
영천군	임고면, 고경면	"	4	785	
고령군	개건면, 우곡면	"	4	356	
안동군	일적면, 남선면	1.29 ~ 31	2	405	
영덕군	창수면, 영해면	"	4	645	
군위군	군위읍, 조보면	"	5	530	
성주군	금수면, 월향면	"	4	501	
영일군	청하면, 외창읍	"	4	467	
청도군	각남면	"	4	414	
울진군	근남면, 원남면	2. 1 ~ 2	4	500	
청송군	청송읍, 부동면	"	3	453	
의성군	가음면, 사곡면	"	4	543	
월성군	전천면	"	4	518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	4	398	
慶尙南道					
울주군	두서면, 언양면	1.25 ~ 26	4	404	
거창군	남강면외 2개면	"	4	480	
의령군	의령읍, 궁유면	"	4	559	
사천군	축동면, 용현면	"	4	557	
양산군	철마면외 2개면	1.27 ~ 28	4	682	
합천군	초계면, 청덕면	"	5	1,189	
진양군	수곡면	1.27	4	889	
고성군	삼산면, 영현면	1.27 ~ 28	4	922	
함안군	칠서면, 칠북면	1.28 ~ 29	4	702	
하동군	청암면, 화개면	1.28 ~ 31	4	605	
김해군	생림면, 상동면	1.29 ~ 31	4	617	
남해군	창선면	1.29 ~ 2. 1	4	704	
통영군	도산면	1.29	2	150	
의창군	진동면	1.31 ~ 2. 1	4	897	
창녕군	영산면, 유이면	2. 1 ~ 2	4	604	
밀양군	상동면, 청도면	"	4	937	
산청군	시천면, 용업면	2. 1	4	593	
함양군	수동면	2. 1 ~ 2	5	850	
거제군	둔덕면	2. 1	2	205	

2. 農漁民 現地通信員 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市 郡 數	教 育 人 員
京 畿	20	173
江 原	15	73
忠 北	10	142
忠 南	15	225
全 北	13	154
全 南	22	272
慶 北	23	275
慶 南	19	209
濟 州	3	53
計	140	1,576

나. 細部教育 實績

道 別	地 域 別	日 字	教 育 場 所	市 郡 數	教 育 人 員
京 畿	北 部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회의실	10	94
	南 部	3.4	"	10	79
江 原	西 部	3.3	춘천시립문화관	9	44
	東 部	3.14	명주군청회의실	6	29
忠 北	南 部	3.9	청원군청회의실	5	62
	北 部	3.11	중원군청회의실	5	80
忠 南	北 部	3.5	예산군반공회관	8	105
	南 部	3.7	충남도청회의실	7	120
全 北	全 地 域	3.5	완주군청회의실	13	154
全 南	西 南 部	3.7	신안군청회의실	9	91
	東 北 部	3.9	광주시청회의실	13	181
慶 北	北 部	3.5	안동시청회의실	11	123
	南 部	3.7	경북도청회의실	12	152
慶 南	西 部	3.9	진주시청회의실	12	138
	東 部	3.11	경남도청회의실	7	71
濟 州	全 地 域	3.14	북제주군청회의실	3	53

3. 夏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郡 數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忠 南	6	13	28	643
全 北	8	16	34	429
全 南	18	37	100	1,535
慶 北	14	26	70	1,251
慶 南	14	30	55	792
計	60	122	287	4,650

나. 細部教育 實績

道郡名	實施期間	邑面數	部落數	教育人員
忠淸南道				
논산군	7.11 ~ 7.16	부적면 . 가야곡면	6	156
광주군		계룡면 . 이인면	5	175
홍성군	7.18 ~ 7.23	갈말면 . 장곡면	4	76
예산군	"	응봉면 . 와2개면	5	70
서산군	"	부석면 . 조홍면	4	87
당진군	"	함덕읍 . 면천면	4	79
全羅北道				
옥구군	7.11 ~ 7.16	대야면 . 개정면	4	42
익산군	"	용안면 . 황등면	4	39
완주군	"	고산면 . 삼례읍	4	39
남원군	"	산동면 . 수지면	4	43
고창군	"	신림면 . 흥덕면	4	35
정읍군	"	북면 . 정우면	6	31
부안군	7.18 ~ 7.23	동진면 . 백산면	4	105
김제군	"	부량면 . 죽산면	4	95
全羅南道				
광양군	7.11 ~ 7.16	광양읍 . 진상면	4	80
승주군	"	서면 . 낙안면	4	88
해남군	"	삼산면 . 현산면	4	68
영암군	"	영암면 . 군서면	4	51
강진군	"	강진읍·2개면	4	46
장흥군	"	장흥면 . 유치면	3	58
나주군	"	금천면 . 다시면	8	125
무안군	"	삼향면 . 일로읍	11	208
광산군	7.18 ~ 7.23	본량면 . 비아면	14	87
화순군	"	화순읍 . 도곡면	13	110
곡성군	"	녹과면 . 오산면	4	26
구례군	"	응방면 . 마산면	4	48
고흥군	"	풍양면 . 도양읍	4	105

道 郡 名	實 施 期 間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보 성 군	7.18 ~ 7.23	조성면 . 보성읍	4	95
함 평 군	"	신광면 . 대동면	4	83
영 광 군	"	묘량면 . 군서면	4	92
담 양 군	"	대덕면 . 용 면	3	91
장 성 군	"	장성읍 . 삼계면	4	74
慶 尚 北 道				
달 성 군	7.11 ~ 7.16	옥포면	6	54
고 령 군	"	쌍림면 . 성 산면	6	42
성 주 군	"	월 향면	3	40
금 름 군	"	지례면 . 대덕면	9	126
선 산 군		고아면 . 선산읍	5	66
상 주 군	"	상주읍 . 사별면	7	70
의 성 군	"	용양면 . 단촌면	3	46
군 위 군	"	군위읍 . 효령면	7	70
안 동 군	7.18 ~ 7.23	일직면 . 풍천면	4	54
영 천 군	"	화북면 . 신령면	4	59
영 일 군	"	청하면 . 대 송면	4	74
월 성 군	"	양남면 . 산내면	4	115
경 산 군	"	남천면 . 자인면	4	215
청 도 군	"	이서면 . 각남면	4	220
慶 尚 南 道				
함 안 군	7.18 ~ 7.23	가야면 . 군북면	4	29
의 령 군	"	칠곡면 . 대외면	4	28
거 재 군	"	동부면 . 의 2 개면	4	62
고 성 군	"	개 천면 . 의 3 개면	4	60
함 양 군	"	지 곡면	4	88
거 창 군	"	거 창읍 . 주상면	5	85
진 양 군	"	문산면 . 금산면	4	66
산 청 군	"	시 친면 . 삼장면	4	49
김 해 군	"	외동면 . 의 2 개면	3	80
의 령 군	"	지 정면	2	10
사 천 군	"	곤양면 . 서포면	4	25
하 동 군	"	금 남면 . 고전면	5	36
밀 양 군	"	산 외면 . 초동면	4	88
울 주 군	"	청 양면 . 농 소면	4	86

4. 秋季 部落單位 座談教育

가. 教育實績 總括

道 別	郡 數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京 畿	7	18	26	887
忠 北	3	6	13	473
忠 南	9	17	26	2,584
全 北	5	11	20	735
全 南	16	32	54	1,743
慶 北	8	18	29	968
慶 南	8	15	32	1,004
計	56	117	200	8,394

나. 細部教育 實績

道 郡 名	實 施 期 間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京畿道				
화성군	10.21 ~ 10.24	서둔동	1	400
안성군	11. 1 ~ 11. 3	안성읍 외 3 개면	4	88
김포군	11. 1 ~ 11. 5	양촌면 . 흥진면	2	75
강화군	"	불은면 . 하점면	4	79
평택군	11. 3 ~ 11. 5	고덕면 외 2 개면	4	52
여주군	11. 8 ~ 11.11	능서면 외 2 개면	6	133
이천군	"	이천읍 외 2 개면	5	64
忠清北道				
충원군	10.25 ~ 10.30	소태면 . 엄정면	5	211
음성군	"	원남면 . 음성읍	4	189
청원군	11. 8 ~ 11.11	가덕면 . 남일면	4	73
忠清南道				
부여군	10.21 ~ 10.24	석정면 외 3 개면	전 지역	100
공주군	"	공주읍	전 지역	1,800
논산군	10.25 ~ 10.30	광석면 외 3 개면		57
서산군	10.27 ~ 11. 1	응암면 . 고북면		72
당진군	"	당진읍 . 고래면		77
아산군	11. 3 ~ 11. 6	인주면 외 2 개면		77
천원군	11. 8 ~ 11. 9	천지역	전 지역	300
보령군	11.15 ~ 11.20	청나면 . 주표면		58
예산군	"	응봉면 . 오가면		43
全羅北道				
김제군	10.25 ~ 10.30	부랑면 외 2 개면	4	64
옥구군	10.25 ~ 10.30	대야면 . 임리면	4	181
완주군	"	봉동면 . 삼례읍	4	178
익산군	10.31 ~ 11. 5	금마면 . 삼기면	4	177
남원군	"	송동면 . 대강면	4	135
全羅南道				
승주군	10.21 ~ 10.24	해룡면 . 상사면	4	37
여천군	"	소라면 . 삼일면	4	46

道 郡 名	實 施 期 間	邑 面 數	部 落 數	教 育 人 員
강진군	10.25~10.30	도암면·신전면	2	141
장흥군	"	만양면·용산면	2	172
해남군	11. 1~11. 6	화산면·삼산면	4	140
영암군	"	덕진면·금정면	4	95
광산군	"	송정읍·서장면	4	200
담양군	"	수북면·금성면	4	107
나주군	11. 8~11.13	왕곡면·산포면	5	82
함평군	"	학교면·함평읍	5	41
장성군	11. 15~11.20	전지역	전 지 역	407
영광군	"	영광읍·군남면	2	40
보성군	"	조성면·겸백면	4	42
고흥군	"	과역면·남양면	4	56
정읍군	"	입암면·소성면	4	64
고창군	"	고창읍·홍덕면	4	73
慶尙北道				
의성군	10.25~10.30	의성읍·봉양면	3	54
안동군	"	풍천면·남선면	4	85
금릉군	11. 1~11. 6	계령면·남면	4	99
월성군	"	양북면·현곡면	4	133
영일군	"	영일읍·오천읍	4	139
성주군	"	선남면·용암면	4	120
상주군	11. 15~11.20	상주읍·사발면	2	129
예천군	"	용문면 외 3개면	4	209
慶尙南道				
통영군	10.25~10.30	광도면·도산면	6	253
거제군	"	동부면·거제면	4	169
의창군	"	진전면·진북면	4	175
진양군	"	금곡면·문산면	4	190
창녕군	11. 3~11. 8	성산면	2	23
합천군	"	대양면·율곡면	4	40
고성군	11. 7~11.12	영도면·개천면	4	85
사천군	"	측동면·군양면	4	69

5. 機關 出講教育

日字	要 請 機 關	教 育 對 象	教 育 人 員	教 育 內 容
1.25	동 해 시 청	공 직 자	1,062	세계경제동향과 우리경제
1.25	동 대 문 구 청	"	300	"
1.26	동 해 시 청	"	1,062	"
1.26	종로 구 청	공직자·시민	200	"
1.27	동 대 문 구 청	공 직 자	300	"
1.28	병 무 청	"	382	"
1.28	동 대 문 구 청	"	100	"
1.31	도 봉 구 청	"	384	"
2. 2	한국 관 광 공 사	임 직 원	400	"
2. 4	전국 농업 기술자 협회	영농후계자	570	경제발전과 농업개발
2. 8	"	"	370	"
2.11	서울·경기 양돈업 협동조합	조 합 원	80	협동조합운영과 농민의 복지증진
2.16	농 수 산 부	공 직 자	45	개발경제체제에 대비한 농업의 대응방안
2.18	서울·경기 양계 협동조합	조 합 원	110	한국의 양계업과 협동 조합의 필요성
2.24	한국농어촌교회대책위원회	목 사	70	한국농업경제의 현황과 전망
3. 9	농업 공무원 교육원	농수산공무원	120	영농기계화
3.14	Y W C A	여 성 단 체	40	농촌실정과 농정방향
3.16	농 협 중 앙 회	임 직 원	150	전문복합영농과 부업 축산
3.17	"	"	150	"
3.24	파주군 농촌지도소	공 직 자	200	한국의 농업정책발전
5. 7	동양공업 전문대학	학 생	750	세계경제와 나라살림
5.17	농 수 산 부	공무원(과장)	40	농산물유통
5.24	농업 공무원 교육원	"	60	"
5.27	우이국민학교	학교자문회	450	식량문제와 공해
5.26	지방행정연수원	공 무 원	100	경제발전과 농촌개발
6. 2	"	"	100	"
6.16	양돈협회	지부대표	150	양돈사업의 안정과 양 돈인의 역할

日字	要 請 機 關	教 育 對 象	教 育 人 員	教 育 內 容
6.23	서울우유협동조합	연 수 생	130	낙농산업의 전망과 협동조합
6.24	지방행정연수원	공 무 원	150	경제발전과 농촌개발
6.24	"	"	150	"
6.24	안암국민학교	학 부 모	350	식량사정과 우리경제
6.28	내무부	민방위대원	200	경제발전과 농정
7.12	농업공무원교육원	공 무 원	150	농산물 유통개선
8. 3	전국경제인연합회	임 직 원	20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8.26	지방행정연수원	공 무 원	190	80년대 농촌개발전략
9. 8	농업공무원교육원	"	100	농산물 유통개선
9.19	지방행정연수원	"	70	농촌개발
11.17	축산업협동조합	임 직 원	400	협동조합론
11.18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시주부	1,600	식생활 개선
11.23	축산업협동조합	임 직 원	400	농업경제론
11.29	농촌진흥청	공 무 원	502	농촌경제
12. 6	농촌진흥청	"	508	농촌경제
12.15	서울시농촌지도소	"	100	농정시책과 농어촌살림
43회			12.945	

6. 大衆媒體를 통한 教育弘報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新 聞	1.15	새 마을 신문	농업유통
	1.15	농수산신보	'83 수산업의 당면과제
	1.17	농민신문	대화있는 농정
	1.17	농수산신보	초지개발
	1.22	새마을신문	농업유통
	1.29	매일경제	'83 농정시책
	1.29	한국일보 외	'83 농정시책
	2. 4	서울신문	농축산물 유통
	2. 5	서울신문	선진형 농정
	2. 7	농민신문	'83 농정시책
	2. 7	농수산신보	'83 농정시책
	2.21	농민신문	권하고 싶은 농사
	2.21	한국수산신보	연근해 자원조성과 관리
	3. 7	농수산신보	농축 수산업의 발전
	3. 7	농수산신보	농업관측
	3.21	농수산신보	선진국형 농업(복합영농)
	3.21	농민신문	이상과 현실 사이(청담)
	3.26	새마을신문	농업유통
	4. 4	농수산신보	소값 안정과 축산진흥(청담)
	4. 9	농민신문	송아지값이 오르면(시론)
	4.15	경향신문	'90년대 식생활
	4.16	농민신문	농산물 가격
	4.20	매일경제	농업관측
	4.23	농민신문	농민의식 실태
	5. 2	농수산신보	축산물 유통 개선
	5. 4	한국일보	농민의식 구조
	5. 7	농민신문	농업선진의 길
	5. 9	한국수산신보	수산물의 식량화
	5.14	중앙일보	한국인의 영양실태
	5.23	농수산신보	1991년도 식량수요 전망
	5.23	농수산신보	농업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5.23	농수산신보	'90년대 한국축산
	5.30	농수산신보	농수산물 유통 개선
	6. 3	서울신문	오늘의 농민의식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新 聞	6. 4	농 민 신 문	우리농업의 어제 오늘 내일
	6.11	농 민 신 문	여름철의 영양식
	6.17	한 국 경 제 신 문	식량정책
	7.16	농 민 신 문	지금 어미돼지를 줄여야 합니다.
	7.18	한 국 수 산 신 보	대규모 간척사업과 연안어업에 대한 영향
	7.25	농 수 산 신 보	농수축산업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7.28	동 아 일 보	어민 소득 떨어져
	7.30	농 민 신 문	아까운돈 16 억달러
	8. 6	농 민 신 문	주인의식
	8. 9	매 일 경 제 신 문	5 차 계획 수정과 농림 어업
	8.15	한 국 수 산 신 보	수산물 유통의 현황과 대책
	8.19	중 앙 일 보	식생활 개선과 변화
	8.22	농 수 축 산 신 보	농업 재해보험
	8.27	농 민 신 문	농업의 중요성
	8.27	농 민 신 문	농산물 수출입 정책
	9.10	농 민 신 문	농산물 유통 개선
	9.16	매 일 경 제	농산물 유통 개선
	9.19	매 일 경 제	2 천년대 식량수급과 초지개발
	9.20	매 일 경 제	농산물 유통 개선
	9.22	매 일 경 제	장기축산진흥 대책
	9.24	농 민 신 문	수확기의 쌀값 하락
	9.26	농 수 축 산 신 보	추곡수매, 식량자급
	10. 1	농 민 신 문	농산물 유통
	10. 3	농 수 축 산 신 보	식품가공
	10. 7	농 민 신 문	농산물 유통
	10. 8	농 민 신 문	초지개발
	10.13	코리아타임스	농촌개발
	10.14	코리아타임스	농촌개발
	10.15	농 민 신 문	농산물 유통
	10.17	농 수 축 산 신 보	농지 임대차
	10.17	농 수 축 산 신 보	농촌개발
	10.21	코리아타임스	농촌개발
	10.22	농 민 신 문	농산물 유통
	10.22	농 민 신 문	농촌개발
	10.26	매 일 경 제 신 문	농촌개발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新 聞	11.10	경 향 신 문	도시공업사회와 농촌의 장래
	11.21	농 수축 산신보	내수면 어업발전 방향
	11.29	동 아 일 보	산지초지조성
	11.29	매 일 경 제 신문	산지초지조성
	11.30	한 국 경 제 신문	산지초지조성
	12.10	농 민 신 문	산지초지조성관리
	12.17	농 민 신 문	서기 2000년의 영농설계
	12.19	농 수축 산신보	단위조합장의 선거제도
	12.26	한 국 수 산 신 보	수산진흥의 차름길
放 送	1.23	K B S - T V	뉴우스 파노라마(1 억리터의 우유 생산)
	1.29	K B S - 라디오	대통령 시정 연설중 농림수산분야 해설 대담
	2. 6	K B S - T V	물가를 진단한다(일요토론)
	2. 6	K B S - RADIO	KREI의 현황 소개
	2. 8	K B S - T V	우리나라의 농업발전과 농업의 역할
	2.14	K B S - T V	농산물 가격안정
	2.15	K B S - T V	농산물 구매행위
	2.17	K B S - T V	앞서가는 농어촌
	3. 6	K B S - T V	산지초지개발
	3.19	K B S - T V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앞서가는 농어촌)
	3.21	K B S - T V	물가안정은 주부손에 달렸다. (알뜰살림)
	4. 7	K B S - T V	우리의 농촌(앞서가는 농어촌)
	4.19	K B S - T V	농산물 유통(앞서가는 농어촌)
	4.20	K B S - T V	세계식량사정과 대책 (앞서가는 농어촌)
	4.20	K B S - RADIO	식생활 체계 전망
	5.15	K B S - T V	축산물 생산기반의 확대 방안
	5.17	K B S - T V	농산물 유통 개선과 방향
	5.24	K B S - T V	낙농산업의 육성 대책
	6.15	K B S - T V	수산물 가격보장과 방향
	6.30	K B S - T V	산지의 경제적 이용 방안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放 送	7. 3	K B S - T V	보리수매가 결정 배경
	7.25	K B S - T V	인구증가억제 및 식생활 개선
	7.26	K B S - T V	인구증가억제 및 식생활 개선
	9.15	K B S - T V	인공풍년시대
	9.19	M B S - T V	풍년
	9.23	K B C - T V	추곡수매
	9.26	M B C - T V	알뜰살림
	10. 4	K B S - T V	쌀의 중요성
	10. 6	K B S - T V	쌀의 중요성
	10.12	K B S - T V	식생활 개선
	10.17	K B S - T V	추곡수매
	10.18	K B S - T V	쌀의 중요성
	10.21	K B S - T V	초지조성의 필요성
	10.27	M B C - T V	추곡수매
	10.27	M B C - T V	추곡수매
	11. 2	M B C - T V	쌀농사와 농가소득
	11. 3	K B S - T V	농촌이 잘 살려면
	11. 9	M B C - T V	돼지생산 조절
	11.14	K B S - T V	식탁에서 낭비를 없애야
弘 報 誌	1월호	축 산 진 흥	창립 2주년을 맞으며
	1월호	축 산 진 흥	초지개발
	춘 계	한 농	초지개발
	1월호	월 간 양 돈	양돈업의 발전 방향
	1월호	현 대 양 행	한국수산업의 당면과제와 전망
	2월호	서 울 우 유	'83 초지개발 시책
	2월호	현 대 해 양	수산물의 식량화
	3월호	서 울 우 유	쇠고기생산과 낙농
	3월호	농 산 물 유통 정보	대도시 대중어 소비
	4월호	서 울 우 유	축산물의 자급 생산
	4월호	축 산 진 흥	소값 안정과 축산진흥
	4월호	국 회 보	농업발전과 축산개발
	4월호	농 산 물 유통 정보	전문 복합영농과 부업 축산
	4월호	농 광	물가안정과 농산물 가격
	4월호	국 회 보	수산업의 당면과제
	5월호	새 농 민	전문 복합영농과 부업 축산

區 分	日 字	媒 體 名	內 容
弘 報 誌	5 월호	월 간 양 계	양계 산업의 성장과 발전 방향
	5 월호	종 합 축 산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5 월호	현 대 해 양	어 가의 장기적 소득 증대 대책
	6 월호	서 울 우 유	우유 수입 자유화와 낙농 산업
	6 월호	농 업 진 흥	농정의 당면 과제
	6 월호	새 어 민	수산물의 부가가치
	7 월호	물 가 정 보	물가 안정과 부문간 불균형 문제
	7 월호	월 간 양 돈	양돈 산업의 불황과 타개 방안
	7 월호	농 산물 유통 정보	뉴욕 어시장의 고포 상인
	7 월호	새 농 민	보리 수매가 결정 배경
	8 월호	현 대 양 계	수입 자유화와 농업
	8 월호	새 어 민	수산업의 전망
	9 월호	식 품 과 영 양	경제 발전에 따른 식생활 변화
	9 월호	삼 성 (주)	인구와 식량 문제
	10 월호	물 가 자료	물가 정책과 추곡 수매
	추 계	한국 바이엘 사보	양돈 정책
	10 월호	현 대 해 양	연근해 어업의 장래
	11 월호	식 품 공 업	수산 가공업의 발전 방향
	11 월호	농 산물 유통 정보	수산물 유통 개선
	12 월호	마 당	추곡 수매
	12 월호	물 가 자료	농수산물 수급 전망

IV. 教 育 現 場 所 感 ①

農漁民經濟教育, 一線에서 본 所感

崔 奉 圭

(全北金堤郡守)

第5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政府는 國民들에 대한 經濟教育을 精力的으로 推進해오고 있다. 그것은 開放社會를 志向하는 政策意志의 表현이기도 하겠는데 國民들이 政府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라살림 형편을 그때 그때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만 自發的으로 기꺼이 國政에 參與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政府가 國民經濟教育의 一環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對農漁民經濟教育도 같은 文脈에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新聞 放送 TV 등 매스컴이 對農漁民經濟教育에 많은努力을 기울리고 있고 農村指導所 등 關係公務員들도 農漁民經濟教育에 나름대로의 最善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狀況에서 82年부터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研究陣이 農漁民經濟教育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은 우리 一線行政擔當者들로서는 크나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農村과 農業을 專門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韓國農經研의 研究陣은 TV 등을 통해 營農技術的側面이 아닌 全體 나라살림과 農業과의 관계에 力點을 두고 經濟教育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農經研의 研究陣은 또한 직접 農漁村一線까지 찾아 다니며 農漁民經濟教育을 실시하고 있는데, 金堤郡의 경우 82年 4月 成培永 박사와 李永錫 責任研究院이 3백명 가까운 農漁民, 公職者를 대상으로 經濟教育을 實施한 이래 83年에도 夏穀收買 및 秋穀收買와 관련하여 두 차례 農漁民經濟教育을 實施하였다.

다소 論難이 있었던 83 年 秋穀收買의 경우 農民들이 별 말썽없이 政府의 決定을 따라준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열성적으로 推進했던 經濟 教育으로 農民들이 秋穀收買決定의 背景과 政府의 苦衷을 충분히 理解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사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經濟」라고 하면 農民들은 물론 一般 國民들도 專門家들만이 아는 일이고 國民들은 그저 따라 주기만 하면 된다는 認識이支配的이었다. 심하게 말해서 農民들은 「經濟」라 하면 아예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까지 하는 實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各界에서 끈기있게 추진해온 對農漁民經濟教育의 결과로 이제는 農民들도 經濟 혹은 國家經濟가 곧 자신들의 生活과 直結되는 것임을 잘 알게 되었다.

그 한가지 例로 農民의 賯蓄을 생각해 본다. 목돈을 만져보기 어려운 農民들의 형편으로서는 오직 목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一念으로 푼돈을 모아 賯蓄을 했고 푼돈이 모여 목돈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이제 農民들은 자신들의 賯蓄이 產業資金을 形成하는데 寄與하고 있으며 國民經濟發展에 큰 功獻을 하고 있음을 잘 알뿐더러 그 사실에 自負心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農民의 購買力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國力を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輸出主導政策의 功勞가 분명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農民의 購買力이 큰 力을 했다는 사실을 農民들은 알고 있다. 農民들이 열심히 努力하면 收入이 늘고, 收入이 늘면 購買力이 커지고 工產品에 대한 需要가 커지면 就業이 늘고, 就業이 늘면 國民經濟가 成長한다는 것을 알고 農民들은 더욱 더 열심히 努力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곧 總濟를 잘 몰랐을 때 스스로 經濟圈 밖으로 소외되어 있던 農民들이 經濟를 알게 되면서 부터 能動的으로 經濟圈안에 偏入되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對農漁民經濟教育의 구체적인 成果로 볼 수 있겠다.

얼마 전까지의 農村은 사실 먹고 사는데 급급했었으나 이제는 일단 衣食住 문제는 解決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農村問題는 새로운 視角으로 接近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滿足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認識이 農村에서도 급격히 擴散되고 있다. 이른바 福祉農村에 대한 概念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農村과 農業問題를 專門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農經研으로서는 對農漁民經濟教育에 있어 그때 그때 나라 살림에 대한 說明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福祉農村의 未來像을 提示하고 農民들에게 希望을 안겨주는 作業도 아울러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經濟教育의 現場에 나오는 講師陣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이것은 반드시 農經研 研究陣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本人을 포함한 經濟教育擔當者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볼 問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첫째, 自己本位의 教育을 피하자는 것이다. 專門用語를 사용할 경우一般聽衆은 소화할지 모르겠으나 農民들은 그렇지가 않다. 教育者가 너무 有識해도 農民들은 거리감을 느낀다. 거리감을 느끼는 聽衆들에게所期의 教育成果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政府 혹은 知識層과 農民間에 對立感만 助長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有識한 文字나 外國語를 鑑用하지 않는 것도 留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事例爲主로 教育을 하라는 것이다. 農民들에게는 具體的인 事例를 손에 쥐어 주어야 하지 論理的인 展開는 떡혀들어 가지 않는다. 一般聽衆들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음미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效果의인 수도 있겠으나 農民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思考作業을 할 만큼 時間여유가 많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어떤 利益이나 損害가 얼마만큼 돌아오는지를 具體的으로 提示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現場教育에 나가는 講師는 그 地方出身인 쪽이 효과적이다. 굳이 地方色을 들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地方出身은 그 地方에 대한 知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言語에서도 聽衆들에게 더욱 親密感을 주고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一線行政擔當者の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農經研의 研究陣이 對農漁民經濟教育에 기울여온 努力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잘 살고 더욱 좋은 農村을 이루하기 위해 더욱 精力的인 經濟教育이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教育現場所感 ②

研究院에 대한 의구심 말끔히 씻어

홍종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現地通信員, (京畿平澤)

“農村에는 너와 같은 젊은 힘이 더욱 必要하다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農村經濟研究院에서 實施하는 教育을 받으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고속버스 안에서 과연 무슨 內容의 教育일까 궁금했던 중 우연히 같은 通信員을 만나 금방 친해져 目的地를 찾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았다. 正門부터 친절하게 맞아 주시는 직원들과 깨끗하고 아담한 건물, 잘 정돈 된 회의실은 나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다. 司會者의 開會선언에 이어 원장님을 대신한 副院長님의 人事말씀, 經濟教育, 設問調查, 調査業務教育, 質疑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教育內容中 “商業化 農業”이라는 單語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農業技術의 향상으로 인한 農產物의 増產은 收支改善에 큰 역할을 했지만 統計의 不正確性과 流通構造의 복잡성은 收支改善에 障碍要因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與件으로 보아 農民의 慾心만을 채울 수 없는 점도 理解는 가지고 땅을 가장 사랑하는 農民에게 그만한 代價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教育을 받으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研究院의 職員들이 정말로 農村開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일까 하고 의구심을 가져었다. 그러나 質疑에 대한 誠實한 答辯과 職員들의 一舉一動에서 그것이 부끄러운 생각이었음을 알았다. 앞으로도 1년에 한번쯤 여전이 허락한다면 이런 보람된 모임을 갖고 더 많은 質疑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뜻있는 農村의 젊은이를 대상으

로 한 設門調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이런 有益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農村經濟研究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한다.

教育現場所感 ③

現場에서 본 經濟教育

韓相福

忠南 唐津郡 農村指導所長

農村經濟研究院에 대하여는 그동안 筆者에게 送付된 各種 研究報告書, 季刊 “農村經濟”誌 등의 刊行物을 통하여 그 機能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一種의 校外 教育事業인 農村指導事業 一線 責任者인 筆者の 現地 指導活動에 많은 보탬이 되어 왔던 터여서 農村經濟研究院 研究陣의 現地 教育은 각별한 關心과 期待感을 갖게 하였다. 때문에 1982年 4月 本郡의 指導級의 農漁民과 農水產 公職者를 對象으로 實施한 農村經濟研究院의 經濟教育에는 當初 計劃에 없었던 農村指導所 邑 - 面支所 職員까지도 全員 參席도록 하였으며 그 後 數次에 걸쳐 實施된 마을單位 巡迴教育時에도 管內 職員을 參席시켜 農民들과 함께 教育을 받게 하여 農民指導力量을 키우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筆者 스스로 機會있을 때 마다 農村經濟研究院의 教育을 받는 農民들을 찾아 그들의 反應을 살피게 되었다. 筆者 自信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선 博士 學位를 가지신 德望있는 분들께서 山間 오지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感謝하며 謙虛한 對話의 자세로 國內外 經濟與件을 說明하고 자칫 誤解나 不信의 所在가 될 수도 있는 農政施策에 대한 背景 내지는 必然性을 理解시켜 줌으로써 管內 農漁民이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認識하고 生業에 의지를 굳힌 例를 여러번 發見할 수 있었다. 이로서 大統領 閣下께서 機會 있을 때 마다 強調하시는 바와 같이 “經濟教育은 專門的이고 理論的인 것이 아니라 各者自己 分野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經濟常識을 알려 주는 것”임을 再認識하게 되었으며 營農技術教育 못지 않게 經濟教育을 重視해 온 筆者の 平素의 所信을 더욱 確固히 굳히게 되었다.

農村指導事業에 대한 研究院의 關心과 協助에 感謝드리며 教育의 幅을 더욱 넓혀 주실 것을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V. 農水產 公職者 및 農漁民 經濟教育日誌

1982 年度	
3.10	農水產 公職者 및 農漁民 經濟教育計劃 樹立
3.13	經濟教育教材 “나라經濟와 농어촌 살림” 發刊
3.15	講士要員 自體教育 實施
3.16～ 4. 2	忠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3.16～ 4. 6	忠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3.16～ 4.10	京畿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3.17～ 3.27	夏季 第 1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3.22～ 4. 9	江原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3.26～ 4. 5	夏季 第 2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4. 6～ 4.15	夏季 第 3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4.12～ 4.22	夏季 第 4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4.13～ 4.28	全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4.13～ 5.11	慶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4.13～ 5.13	全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4.13～ 5.14	慶北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4.22～ 4.29	夏季 第 5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5. 3～ 5.10	夏季 第 6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5.11～ 5.12	濟州地域 郡單位 集合教育 實施
5.11～ 5.18	夏季 第 7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5.14～ 5.21	夏季 第 8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5.27～ 6. 3	夏季 第 9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9.25	教材 “養豚不況의 原因과 對策 및 보리 增產의 必要性” 發刊
9.28～10. 3	秋季 第 1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0. 3～10. 8	秋季 第 2 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0.13~10.18	秋季 第3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0.30	經濟教育實施 狀況報告 (農水產部 長官)
1983 年度	
1.13	教材 “農政施策과 農漁村 살림” 發刊
1.14	'83 農漁民 經濟教育計劃 樹立
1.14	겨울 營農教育 出講計劃 樹立
1.25~ 2. 2	겨울 營農教育 出講教育 實施
3. 3~ 3.14	農漁民 現地通信員 教育
7. 5	教材 “複合營農의 現場” 發刊
7.11~ 7.16	夏季 第1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7.18~ 7.23	夏季 第2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8.17	教材 “나라 經濟와 農業問題” 發刊
9.13	農漁民 經濟教育 體系化 方案 報告 (農水產部 長官)
10.21~10.30	秋季 第1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0.30	教材 “'83 쌀 收買價格과 收買量” 發刊
11. 1~11. 6	秋季 第2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1. 8~11.13	秋季 第3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11.15~11.20	秋季 第4次 部落單位 座談教育 實施

빈

면

VI. 附錄 ①

나라 경제와 농업문제

빈

면

차 례

1 .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	59
2 .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	61
3 . 농업의 현안문제	64
4 . 쌀 생산비 산출	64
5 . 식량 수급사정과 수매 가격 수준	67
6 . 농산물 수매 예시제	71
7 . 주요 농업자재 가격	73
8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과 환경 오염	77
9 . 농가 조세 부담	78
10 . 농가 부채	80
11 . 농지 문제	83
12 . 농·축·수산업 협동조합 운영	85

빈

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우리 나라는 자연의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제3위로 꼽히고 있으며 그위에 우리는 북의 공산침략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방위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여건에 놓여 있음도 또한 사실입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농업국가로 자처해 오고 있으나 실은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로 농경지 면적은 농가호당 1 ha 남짓하며 국민전체 1인당으로 볼 때에는 170 평 (0.06 ha) 정도에 불과해 매우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농경지 면적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세계 전체 평균은 0.41 ha입니다. 농경지가 풍부한 캐나다는 2.84 ha, 미국은 1.94 ha, 브라질은 1.74 ha, 프랑스는 0.59 ha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중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산물(예컨대 목화, 커피, 코코아, 고무, 사탕수수, 사탕무우 등)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여건과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공업화, 도시화로 농가인구는 매년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농가비율이 1965년에는 55.1%이던 것이 점차 감소되어 1982년에는 2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가인구 감소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만도 아니고 일본이나 대만을 비롯한 특히 공업화로 인하여 국민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나라에서 농촌인구의 감소율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농업은 그 자체가 갖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높은 성장은 어려운데 비하여 2·3차 산업은 수출 등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므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2~1981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3% (그중 광공업 15.4%, 사회간접

자본 기타 8.7 %)인데 대하여 농림수산업은 3.3 % 씩 성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동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이 낮은 곳으로 메워지듯 개인소득에 있어서도 도농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국민전체의 소득이 높아지고 잘사는 복지국가를 조속히 실현함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여건 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한 농경지와 빈약한 자연자원으로는 경제발전이나 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자연히 경제개발 전략을 해외에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업화의 촉진과 수출증대로 1982년 현재 국민소득 1,672 달러(잠정)로 선진국의 문턱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과 함께 수출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로 꼽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상호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대내적으로 통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부존자원이 남한보다 훨씬 풍부하고 인구는 반 이하인데도 국민 총생산은 우리의 5분의 1 정도이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절반 이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집단농장에 그 많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으나 개방되지 않은 사회, 외국과 협력하지 않는 체제에서는 갈수록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반드시 잘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기술축적이 없을 때에는 경제가 발달 할 수 없는 반면(남미, 아프리카 등)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온 국민이 협심하고 지혜를 모아 그 나라에 알맞는 경제정책을 세워 해외에 문호를 넓혀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한다면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라 하면 세계에서 국민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나라는 국토면적이 우리의 2분의 1 정도이며 인구는 6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우리보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서도 전체 국민은 근면, 성실히 일하며 남이 하기 어려운 정밀기계 공업에 눈을 돌려 비싼 상품을 개발 수출 함으로써 서구에서도 으뜸가는 공업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존재하기조차 어려워짐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하여는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

1960년대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이른바 고도성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싼 이자의 외채를 쓸 수 있고 값싼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의 풍부하고 값싼 노임으로 손쉽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등을 겪는 동안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은 오르고 국제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선진국의 무역마찰과 무역장벽은 갈수록 두터워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실업률은 10~13%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고 개발도상국 중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외채상환문제가 어렵게 되는 등 나라마다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라 매년 30~40% 정도 신장하던 우리의 수출이 많이 둔화되어 1982년에는 219억 달러로 불과 2.8%의 신장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도입한 차관액이 1982년 말 현재 372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국방비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위하여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를 국내저축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더 많은 외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출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물가 부터 안정을 기해야 하고, 상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가 절감되어야 하며 국제간의 신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가안정 물가를 못 잡으면 모든 경제적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서독 국민은 실업을 택할지 인정 인플레를 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후(제1·2차 대전후) 서독에서는 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린 인플레의 공포를 얼마나 뼈아프게 느꼈던지 이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는 견전한 국민의 재산형성을 일시에 파괴해 버리는 반면 부동산이나 보석, 그 이외에 생활필수품을 매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극히 불건전한 투기가 생기게 마련이며, 따라서 저축은 부진하고 투자는 어렵게 되어 실업자의 증가, 경제성장의 부진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처럼 1982년부터 안정기조에 들어서고는 있으나 이를 더욱 공고히 다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1982년에 도매물가상승 4.7%, 소비자 물가상승 7.3%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웃 나라의 예를 보면 도매물가가 일본은 0.5%, 대만은 마이너스 0.7%,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4.2%, 미국은 2.1%로 우리보다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물가안정과 함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듯이 오늘에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내일도 비교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나라마다 각국의 이익과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던 시대는 일본의 도전으로 물러서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계속해서 그 위치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읍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상위 개발도상국이 날로 발전하여 겨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자유화 및 시장경제체제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체 등 경제단위는 숫자로나 규모로나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질적인 향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거미줄 엉키듯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변적이고 철새없이 일어나는 거래는 오늘의 유망업종을 내일에는 사양산업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대형화된 민간기업은 우수한 경영진에 의해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기하며 상품을 대량공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능력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겨 그 수급을 조절하고 자율적인 가격형성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계획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공산권 국가(특히 북한)의 상품생산력과 품질은 자유진영국가와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로 육성하지 않으면 대외경쟁력을 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입에 있어서 완전자유화는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야 하고 전체 국민경제와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해서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많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하며 또한 국제간에 호혜의 정신으로 주고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수입의 장벽만 높이고 수출만 하겠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시장 개척내지 확장을 위하여 수입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현안문제

그동안 우리 농업은 전체 경제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하였고 농가소득 또한 많은 증가를 가져왔으며 급속한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문제에 있어서 정부 수매가격이 미흡하여, 농산물가격은 사전예시가 되어야 하고, 소작제도의 폐지, 농가부채의 탕감,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 가격의 대폭인하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나라 전체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농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의 재정 또는 전체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 다른 사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만 어렵다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문제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극단의 주장을 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앞에서 지적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하나 하나 실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쌀 생산비 산출

아직도 우리 농가의 주수입은 쌀농사로 전체 농작물 수입 중 49%('82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쌀의 정부 수매가격 수준이나 생산비 산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농민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비 산출에 있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쌀생산비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126-11-03 호로 지정되어, 농수산부에서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 생산비 조사가 지정통계로 된 것은 이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쌀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비는 누구나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쌀 생산비를 조사할 수 있겠으나 생산비 조사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쌀 생산비는 지역에 따라 수량의 차이가 크고, 농가에 따라 경영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를 산출하기란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개 농가를 아무리 정확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을 대표하는 완전무결한 생산비를 구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현재 농수산부 통계관실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2,534 호에 달하는 농가를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기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정된 농가는 생산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장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통계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이 기장한 것을 검토지도하고, 기장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면접하여 대리기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기장된 자료는 중앙에 보고되어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집계된 쌀의 가마당 생산비와 수매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982년의 경우 가마당 생산비는 36,853 원이었고, 수매가격은 55,970 원(2등품기준)이었으므로 가마당 19,117 원의 생산자 수익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마당 생산비는 전국 평균이며, 지역에 따라 이보다 생산비가 상당히 높은 농가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낮은 농가도 있습니다. 1982년도 가마당 생산비 수준별 농가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최저 23,000 원에서 최고 66,200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에 따라 가마당 생산비의 차가 큰 것은 주로 단위면적당 수량차가 크기 때문이며, 경종방식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쌀생산비는 농가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농가선정 여하

쌀 생산비와 수매가격 비교

(단위 : 80 kg들이 2등품가마당, 원)

연 도	생 산 비 (1)	수 매 가 격 (2)	(2) — (1)
1978	20,664	30,000	9,336
1979	24,878	36,600	11,722
1980	40,238	45,750	5,512
1981	36,033	52,160	16,127
1982	36,853	55,970	19,117

자료 : 농수산부 통계관실

1982년산 가마당 쌀 생산비별 농가분포

구 분	농 가 수	구 성 비 (%)
23,000 원 미만	9	0.4
23,000 ~ 33,800 원	976	31.4
33,800 ~ 44,600 원	1,148	45.3
44,600 ~ 55,400 원	453	17.9
55,400 ~ 66,200 원	110	4.3
66,200 원 이상	18	0.7
계	2,534	100.0

자료 : 농수산부 통계관실

에 따라 가마당 쌀 생산비가 현저히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는 노임, 비료대, 토지자본 이자 등 여러 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비용에 대한 조사와 평가 방법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마다 쌀 생산비는 꼭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농가마다 다른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수매가격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국의 쌀 생산비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 생산비의 산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

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계조사의 표본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실제조사와 이를 집계하는데 있어 과학적인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평균 생산비는 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수급사정과 수매가격수준

우리 나라의 식량 소비 추세를 보면 1960 ~ 1980년간의 식품 소비 형태는 식용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1960년도의 167.2 kg 에서 1970년대에는 219.4 kg 까지 증가되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곡종별로는 쌀이 1960년도의 112.7 kg 에서 1970년에는 136.4 kg 으로 증가하였고, 1972 ~ 1977년 기간중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9년에는 135.6 kg 까지 다시 증가되었으며, 197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보리쌀 소비량은 1970년대 중반까지도 30 kg 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소비자 선호도가 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소비량이 $14 \sim 15\text{ kg}$ 으로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인 곡물 소비의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축산물 및 과수, 채소류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곡물의 수요가 급증되어 옥수수, 대두 등 사료 곡물 수요량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곡물 수요 증가는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도와 같이 극심한 냉해로 쌀 생산이 3분의 1 정도 감수됨에 따라 부득이 외미를 도입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흥작 등으로 절대 수요량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쌀, 보리 등 주곡을 도

입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는 품목은 도입하지 않고 일시적인 부족은 소비절약으로 극복하고 있읍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품목은 자급이 될 때까지 증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식량 수급 여건상 전체 식량을 자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읍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산물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가뭄, 홍수, 태풍, 병충해 등 자연적 조건에 따라 변동이 심한데 반하여 소비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되는 한편, 생산은 대부분 한 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고, 단경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하여 생산기간이 길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산을 금방 늘리기도 어렵고, 가격이 내렸다고 생산을 즉시 감소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은 대단히 불안정하므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는 주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인

이 중 곡 가 내 역

(단위 : 원)

곡 종 별	양곡년도	판 매 가 격			방 출가격	가마당적자
		수매가격	조 작 비	계		
쌀	1980	36,600	7,126	43,960	32,000	11,960
	1981	45,750	9,750	55,500	44,000	11,500
	1982	52,160	10,184	62,344	52,280 (44,000)	18,064 (18,344)
	1983	55,970	9,358	65,328	52,280 (43,000)	13,048 (22,328)
보리쌀	1980	22,000	9,618	31,618	10,120	21,498
	1981	26,400	12,546	38,946	18,475	20,471
	1982	29,700	13,691	43,391	19,355	24,036
	1983	33,780	9,473	43,253	28,000	15,253

주 : ()안은 보통미 가격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수확기에 곡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민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였다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앞의 표와 같이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 곡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는 많은 재정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쌀 80 kg 한 가마당의 수매가격은 55,970 원이고, 여기에 도정료, 보관료 등 조작비 9,358 원을 포함하면 판매원가는 65,328 원인데, 이를 소비자에게 52,280 원(상품)에 판매함으로써 한 가마당 13,048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리쌀의 경우 수매가격 33,780 원에 조작비 9,473 원을 포함한 판매원가는 43,253 원이나, 방출가격은 28,000 원으로 한 가마당 15,253 원의 판매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 곡가제 실시에 의하여 1982년 한 해에 발생한 양곡관리 기금적자 총액은 무려 1조 2,465 억 원이나 됩니다. 그중 쌀 판매에 의한 적자는 48 %를 차지하고, 보리쌀에 의한 적자가 43.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증되고 있는 양곡관리 기금적자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우선 차입하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양특적자를 한국은행에서 차입하여 충당하려면 이는 결국 통화증발을 유발,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농기계, 농약등 영농 자재값은 물론 생계비까지 오르게 되므로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잘 안되고 실업자도 늘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기반을 정착시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가안정의

저해 요인이 되는 양곡관리 기금의 적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쌀값과 식료품 이외의 상품값을 지수로 비교하면 1980년을 기준(100)으로 할때 1981년의 경우 쌀값지수는 128.4이고 식료품 이외의 상품지수는 118.8로 쌀값이 9.6%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1982년의 쌀값 지수는 131.2 식료품 이외의 상품 지수는 126.1로서 쌀값이 5.1% 포인트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충은 생산 농민을 위해서는 높은 값이 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낮은 가격이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누적되는 양 특적자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복합적인 것으로,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민으로부터 수매하는 가격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매가격 인상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방출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을 억제하는 경우 농가소득 감소 및 증산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고, 방출가격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면 소비자의 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물가의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매가격은 다른 물가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유지되는 적정수준에서 책정하되 다른 물가를 안정시켜 보다 실익있는 수매가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방출가격은 소비자 가계에 대한 충격을 최

한일간 정부 수매가격 비교

년 도	일 본 쌀 정 부 매 입 가		한 국 쌀 정 부 매입가 원 (B)	비 율 B / A (%)
	현미 (60 kg)엔	쌀80 kg한산 원 (A)		
1980	17,674	83,273	45,750	54.9
1981	17,754	81,935	52,160	63.6
1982	17,951	82,913	55,970	67.5

소화하기 위해서 차츰 인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일본의 쌀 수매가격은 우리보다 3배나 높다고 하나, 실제로 일본의 매입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매가격과 국제 쌀값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쌀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1982년의 경우 국제 가격은 1톤에 평균 273 달러(현미)이었으며, 이것을 도입하여 선임, 운송 보관비 등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이를 백미로 환산하면 80kg 한 가마에 20,970 원이 됩니다.

우리 나라 1982년산 쌀 수매가격은 이것과 비교하면 2.7배 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가격비교

년도	1980	1981	1982
국제가격(FOB) 달러)	409	461	273
도입가격(80kg)(원)	25,370	30,500	20,970
수매가격(80kg)(원)	45,750	52,160	55,970
비율(%)	180.3	171.0	266.9

농산물 수매예시제

수매예시제는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정부에서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미리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땅콩, 참깨, 유채 등에 대하여 예시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농가에서 이들 작물을 심기 전에 정부에서 이들 작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미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쌀과 보리쌀에 대해서도 땅콩, 참깨, 유채 등과 같이 예시

가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읍니다. 그러나 쌀과 보리쌀은 생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형편상 예시가격제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982년도 쌀 수매량은 758만석(생산량의 21%)이었고 가마당(80kg) 수매가격은 55,970원이었으므로 쌀 수매자금은 약 7,64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 나라 연간 화폐 발행액의 약 27%나 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만약에 쌀에 대하여 예시가격제를 실시한다면 농민이 수매하기를 희망하는 전량을 예시한 가격으로 수매해야 하는데 이 막대한 양을 수매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시가격은 수급이 안정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수준을 미리 설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쌀의 예시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영농자재와 생필품 등 타 물가의 초기 상승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한편 예시가격 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된다면 농민의 증산의욕을 감퇴시켜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며 부족되는 쌀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쌀 수입은 국내 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농민들은 2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쌀에 대한 수매예시제는 정부재정형편상,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근의 일본이나 대만도 쌀에 대하여 수매예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곡에 대하여 수매예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 농업자재 가격

정부는 농민의 생산비를 줄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 각종 자재의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고 영농기 이전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료의 경우를 보면, 인광석, 염화가리, 유황 등 수입원자재와 석유값이 생산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유류는 '73년 이래 2차에 걸친 파동으로 비료 생산비가 상승되어 농민에게 판매하는 가격도인 상시켜야 하나 농민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자를 내면서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소 한 포대(25kg)의 인수가격은 6,478 원인데 판매가격은 6,230 원으로 요소 한 포대를 팔면 248 원이 적자이며 복비(21-17-17 기준)는 6,156 원인 것을 5,110 원에 팔아 1,046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비료 인수가격과 판매가격

(원 / 25kg)

구 분	인 수 가 격	판 매 가 격	농 가 보 조 (정 부 결 손)
요 소	6,478	6,230	248
복 비 (21-17-17)	6,156	5,110	1,046

이와 같은 적자는 결국 농민에게 사실상 보조하여 주는 것과 같으며 이와 같은 적자를 비료계정 적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적자의 규모를 보면 '82년 말까지 모두 5,765 억 원이나 되며

'83년에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추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적자와 많은 비료재고 때문에 쓰이게 되는 돈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꾸어쓰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꾸어주기 위하여 새로 돈을 그만큼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가 증발되어 물가안정이나 정부의 재정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되지만 정부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계정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에 발생될 적자를 합하면 '83년 말의 비료계정 적자는 6,785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혹자는 비료값이 비싸거나 국가가 많은 적자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외국

연도별 비료계정 적자

(단위 : 억원)

구 분	1980	1981	1982	1983 (추정)
당 년	1,257	1,623	1,170	1,020
누 계	2,972	4,595	5,765	6,785

투자회사와 불합리한 계약으로 비료회사를 설립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60년대에 외국투자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비료회사는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의 두 회사이며 남해화학은 '70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60년대초까지는 화학비료의 전량을 수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충분한 양을 적기에 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비료값이 불안정하여 농민은 비싼 비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적정한 양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증산에 차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비료의 자급자족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우리 힘만으로는 비료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외국의 합작회사들을 언제 또 6.25 동란 같은 위험부담이 따를지 모르고 투자에 대한 확고한 전

방이 밝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합작을 꺼려했으므로 이를 유도하는 데는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란 일정한 물량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주고 응분의 이익을 내도록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음니다만 만일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역에서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영남화학이나 진해화학을 설립한 합작조건은 다소 불리한 계약이었지만 '82년 말로 이들 회사와의 계약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불리한 계약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남해화학은 '7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한국측의 투자비율도 높고, 정부의 인수물량이나 가격산정 방식에서도 유리하게 되어 있고 공장도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원가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진해, 영남 등 두 회사는 1983년부터 정부의 비료인 수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남해화학도 시설능력의 60%만 정부가 인수하며 배당이익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인수의무기간도 1990년이 1987년으로 단축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년대에 불리한 비료회사 설립 때문에 농민에게 파는 비료가격이 외국보다 비싸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이 외국 농민보다 비싼 비료를 사서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일간 비료가격 비교

단위 : 원 / 25 kg

비 료	한 국 (1)	일 본 (2)	(1) - (2)
요 소	6,230	6,514	△ 284
유 안	2,780	3,120	△ 340
용 성 인 비	2,340	4,954	△ 2,614
염 화 가 리	2,150	4,526	△ 2,37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종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 비료값이 일본 것보다 최소 4.6% 이상 싸거나 2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일본내에서의 가격이지 우리나라가 사다 쓴다고 가정할 때는 일본에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운반하여 오는 비용이 가산되므로 그 만큼 더 비싸질 것입니다.

복합비료 판매가격의 국제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필 리 펜	타 일 랜 드
가 격 (달러/ M_4)	273	453	395	321
비 율 (%)	100	166	145	118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복합비료의 가격을 우리나라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이웃 나라들과 비교하여 봅시다.

앞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비료의 경우에도 최소 18%에서 66%까지 우리나라 보다 외국에서 더 비싸게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농기구나 농약의 경우는 비료와 같이 가격보조제는 아니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농기구나 농약의 경우에도 인건비나 환율 그리고 석유값 등의 인상으로 전체적인 생산원가는 상당히 오르고 있으나 농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며 인상요인은 각 생산업체가 흡수하고 있음을니다. 가까운 예로 금년도의 농약 및 비료가격도 '82년도 가격으로 거치, 고정시키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용자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을 최대한 값싸게 공급하느라고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물량의 공급에 있어서도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과 환경오염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이 우리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인체에 여러가지 유독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명된 농업기술로는 이러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농업 생산력을 올릴 수가 없을 뿐더러 농민의 실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재를 사용하되 이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10a당, 28-30 kg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일본의 31-32 kg에 비하면 적은 양입니다. 화학비료의 지속적인 이용은 토양을 산성화 내지는 노후화시키므로 이를 방지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을 수립, 규산질비료, 석회비료, 객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농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320억 원 정도의 자금(보조 및 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벗짚깔기, 녹비재배, 퇴비시용, 가을에 심경을 실시도록 권장하여 농토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근에는 화학비료를 연용함에도 병충해는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1980년부터 종합방제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방제란 병충해의 발생요인이 되는 품종적 결함과 지력의 쇠퇴, 질소비료의 과다 사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병충해의 발생을 막는데 주력하고 농약의 사용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약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수산부, 보사부,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해 농약을 생산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DDT, BHC, 유기수은제 등 잔류기간이 길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21개 품목은 이미 생산 금지한 바 있어 지금은 환경과 인체에 영향이 적은 농약만이 유통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선진 국가에서 쓰고 있는 농약뿐이며 사용량도 일본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농약 사용시 농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락 방제단에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을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중독시 해독제도 부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위험성은 있으나 안전 사용에 주의한다면 환경과 인명에 전혀 해가 없이 농업증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조세 부담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대부분 지방세로서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가 그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2년도 농가 호당 평균 세부담은 호당 소득 446 만 5 천 원의 1.36 %에 해당되는 6 만 900 원이었으며 도시근로자는 가구당 소득 432 만 7 천 원의 1.44 %에 해당되는 6 만 2,700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 중 농민의 소득과 관련되는 세금은 농지세로서 이는 도시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되는 종합소득세와 자주 비교되고 있습니다. 농지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적 성격의 세제이면서도 두 세제간에 특히 기초 공제액과 세율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의 기초 공제액은 최저 234 만원, 최고 314 만 원으로 평균 276 만 원인데 비해 농지세의 경우는 갑류 115 만원, 을류 34 만원(연 2기작 기준)으로 이를 합해도 149 만원에 불과하므로 농지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의 과표 단계가 16 단계인데 비해 농지 세는 3 단계로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세제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지세는 농가의 연간 총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발생된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리, 두류, 서류, 잡곡 등의 소득세는 면제되고 벼와 과실류 채소류 특수작물 등 특수작물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벼와 특수작물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농가 평균으로 볼 때 농가총소득의 48 %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가의 부업적 축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젖소 20 마리, 소 30 마리, 돼지 150 마리, 산양 150 마리, 면양 150 마리, 토끼 3,000 마리, 닭 3,000 마리, 오리 3,000마리 까지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186 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우는 목돈저축의 이자소득과 단위농협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1982년부터는 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상속세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농가 평균으로 볼 때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가 연간 소득 중 48 %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외 나머지 소득은 사실상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 근로자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잡고 있는 종합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농가소득의 일부(48%)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종합 소득세의 평균 기초 공제액 276 만원의 48%에 해당되는 132 만원과 농지세의 갑류와 을류 기초공제액 149 만원이 비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세는 갑류의 경우, 벼의 수확량(조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표준은 실제 수확량의 80% 수준에 불과한 기준 수확량에 준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공제해 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세의 세율 단계가 종합소득세의 세율 단계에 비해 단순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율 단계는 납세자의 소득 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농가의 경지규모는 대부분 1ha 정도로서 농가의 경지 규모별 계층은 도시 근로자의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율관계를 너무 세분화할 필요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농지세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기초 공제액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류와 을류에 대해 분리 적용함으로써 전업농가의 경우 기초 공제액 혜택이 다소 불균형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을 현물로 고정하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농가에 대해서도 도시 근로자와 같이 완전한 종합 소득과세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가의 소득구조와 담세 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세부담이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 가 부 채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1982년 말 현재 8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등 모든 생산 단위가 확대 재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소요되는 자본을 전부 자기 자금으로만 충당할 수는 없으며 차입금에 더 많은 자금을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도 점차 수지를 계

산하는 상업적 경영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 중에서 농가경제 잉여(저축)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 건물, 대동물, 대식물, 대농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의 자금 순환을 말씀드리면 농가 소득에서 조세 공과부담금, 차입금 이자 등을 제외한 것이 가치분 농가 소득이라 하며, 여기에서 가계비 등 지출을 뺀 것이 농가 경제 잉여 즉 농가 저축으로 남게 됩니다. 이 농가 저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건물, 농기구 등 고정 자산에 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에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 차입금(부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 경제 잉여의 발생률이 적거나, 또는 차입금이 소비적 지출에 많이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농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겠지만, 부채가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가 저축률이 1982년에는 22.5%로 나타나 있고 차입금 중 소비 지출은 1971년에 51.7%이던 것이 1982년에는 37.1%로 낮아짐에 따라 생산적 지출(농업경영비 및 자본적 지출)은 증가되고 있읍니다.

농가 호당 차입처별 부채

(단위 : 원)

연 도	농 가 부 채 (잔액기준)	차 입 처 별 내 역		
		농 업 (%)	개 인 (%)	기 타 (%)
1971	10,282	2,671(26.0)	6,750(65.7)	861(8.3)
1975	33,434	9,673(28.9)	21,899(65.5)	1,862(5.6)
1980	338,465	164,663(48.7)	165,877(49.0)	7,925(2.3)
1981	437,143	215,910(49.4)	210,203(48.1)	11,030(2.5)
1982	829,666	523,741(63.1)	276,193(33.3)	29,731(3.6)

다음에는 농가부채의 사채의존도, 연체비율, 농가자산과 부채비율 등 부채의 전전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가부채 중 사채 의존도는 매년 감소하여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71년에 사채비율은 65.7%, 1975년에는 65.5%, 1982년에는 3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입금에 있어 사채 의존도가 줄고 농협의 차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매년 영농자금을 비롯하여 농업개발자금, 축산진흥자금, 농업 기계화자금, 단위조합 상호금융 등을 확대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비(현금 소요분)의 연간 총소요액은 1조 9,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의 자금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982년의 경우 영농자금 5,000억원, 비료 및 농약 등 외상자재 2,000억원, 단위조합 상호금융 5,300원 등 총 1조 2,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차입금 중 기한 안에 상환 못하는 연체 비율을 보면 1976년은 12.1%이던 것이 1982년에는 9.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가자산과 농가부채의 관계를 보면 1982년의 경우 농가호당 총자산은, 1,880만 4천원이며, 부채는 93만원으로 부채비율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농가 부채 8.5%(1980년), 미국의 농가 부채 19.2%(1981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부채비율(1981년)은 451.5%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생산성의 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채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 자체의 금액 액수보다는 그 내용이 건전하느냐, 불건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 지 문 제

농지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농지제도는 농지의 이용도를 높혀 국민에게 기본 식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권을 농민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농지제도는 경자유전과 농지소유 3 정보 상한제의 바탕 위에 실시한 농지 개혁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개혁사업을 실시한 후 30여 년이 경과되는 동안, 국가경제 및 사회구조가 변천하고 도시화 현상이 점증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농지제도 원칙에 변모를 가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지 개혁 전까지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봉건적인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일제 시대에는 일본인들의 소작 관행으로 소작 농민들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들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예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의 반사적 영향으로 농지 개혁법에서는 소작제도를 근절하여 지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 여건으로 보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2차 대전 후 농지 개혁을 실시한 일본, 대만, 필리핀, 이태리 등 모든 국가에서 전통적인 소작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근대적인 계약 관계인 농지의 임대차제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 농민간의 불화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한정된 농경지를 임대차 관계에 의거 현대적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였던 예와는 다소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의 실시로 소작농은 획기적으로 정리되어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국가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모에 대응한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농지개혁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1960년에는 전체 농경지 중 임차 농지는 1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 말 농수산부에서 조사한 임차 농지는 전체 농경지의 22%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농촌 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지는 농민만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 임차농도법(농지개혁법)의 취지에는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활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농촌에서 살다가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도시 또는 해외취업, 군입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 또는 이웃에게 농지관리(임차농)를 맡기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발생하고 있는 임차농에 대하여 흔히 이를 소작제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읍니다마는 이는 소작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작이란 개념은 비민주적인 사회구조 아래서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이 상례였으며, 소작농은 소작료 율이나 소작기간 등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나, 농지 임대차란 임대자와 임차자의 권리의무는 대등한 관계로서 소작제와는 엄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농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농협은 모든 농촌을 대상으로 수협은 어촌을 대상으로, 축협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조직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원래 서구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그 조직목적이 생활물자 등을 싸게 구매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상호자금을 융통하는 신용협동조합, 농산물의 증산과 판로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형태가 있으나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민, 어민에 대하여 증산, 유통(구매, 판매), 생활물자 공급, 금융, 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는 종합농협, 종합수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사업이 광범위하고 농어민의 이해관계도 많고 일상 농어민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잘 잘못이 지적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농협의 문제점 흔히 협동조합, 특히 농협에 대하여 「관료적이다」「참다운 의미의 협동조합이 아니다」「협동조합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정책사업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있는 반면, 국내의 학자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한국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협동조합이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한 협동조합이다」「개발도상국 협동조합운동의 모범이다」라는 등등의 견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같은 여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므로 무엇보다도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요청되며 또한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특히 농협이 정부 주도로 움직이고 있

으므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은 완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이나 대만 등은 운영방식보다 조합원의 이익보장에 더 역점을 둘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정부의 지원과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조합이 급속히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아프리카나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 여러 나라의 경우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운영방식에 더 역점을 두어 민간에 의해 주도 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은 이름 뿐이고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설립되었다가도 해산되고 다시 설립하는 등 시행착오적인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농지개혁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상인의 손에 맡겨져 있어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협 발전상황을 보면 50년대 말부터 각계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두되었으나 그 당시는 대부분의 농어민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잘 몰랐고 그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 조직을 위한 자체자금이 빈약하므로 자발적인 조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농어민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양곡 및 비료 취급 업무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지원과 함께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그외 영농자금, 주요 영농자재 등도 정부의 보조 내지 응자지원으로 공급케 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정부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정부의 감독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농협이 발족한 지 23년이 지난, 오늘, 물론 자체사업이 많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정책사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의 감독이 따르고 있으므로 농협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자체 사업이 점차 더 개발되고 자체 자금 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자율화의 진전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전국의 단위 조합은 모두 1,470 개소인데, 그중 차립조합이 1980년에 907개소이던 것이 1982년 현재는 1,207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나라의 단위조합의 조합장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조합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흔히 「비민주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조합장 선출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출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먼저 총대를 선출하고, 선출된 총대가 이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이 호선하여 조합장을 뽑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농·축·수협법에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총대를 뽑고, 총대회에서 이사를 뽑고,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호선하여 뽑도록 되어 있으나(축협·수협은 총대회에서 조합장선출)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9인 추천위원회를 구성(총대끼리 호선)하여 조합장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며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앙회장의 임명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자 중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자격 요건상 결격이 없는 이상 임명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와 임명을 절충한 형식으로 이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강조하면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선거제는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의 경우 조합장을 직접 조합원이 선거한다면, 예컨대 대구 능금조합은 대상 지역이 전 경북도이므로 전체 조합원 8,300 여명이 투표를 해야 하고,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대상지역이 서울, 경기도이고,

냉동물제조 수산협동조합과 통조림협동조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합운영은 경영의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인기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내실없는 경영이 될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지난 1978 ~ 1979년에 95개 농협 차립조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역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협동조합은 종합조합으로 생산,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가공이용사업, 신용사업 등 조합원의 살림에 관계되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60년대에는 농사자금, 비료, 농약공급등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70년대에는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연쇄점사업, 지붕개량, 농로확장 등 새마을사업, 새마을종합개발사업, 농기계의 본격적공급 등 업무를 추가하게 되고 80년대에는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사업, 복합 영농사업의 지원, 입원공제 등 공제사업의 확충,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사업은 예수금이 1982년 말 현재 중앙회 단위분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자금을 비롯한 농업기계화자금, 농기업자금, 주택자금, 농업개발자금 등 여러 가지 응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983년에는 대출금만 하더라도 총 1조 2,000억원 정도 (단협 5,300억원은 별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농협의 성장 발전과 함께 농어민들의 협동조합 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성장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농협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은 선진국의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

농 어 민 의 농 협 이 용

구 분	1976	1982
단협출입회수(월평균) (회)	3	5
자금차입 이용농가비율 (%)	50	80
연 쇄 점 이용 비율 (%)	55	82

고 있으며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개발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도 농어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를 받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빈

면

附錄 ②

1983년도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빈

면

목 차

'83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95	
'83 쌀과 보리 수매의 필요성 96	
쌀 생산비 산출방법 97	
'83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의 배경 99	
양특적자의 발생과 해소 102	
'83 쌀 수매 실시 요령 104	
농가소득과 복합영농 105	

빈

면

'83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정부는 1983년 10월 27일 금년도 쌀 수매 가격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정곡 2등품 기준 80kg 가마니당 55,970 원으로 하되 수매량은 작년보다 100만석을 늘린 800만석을 수매하기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수매는 1983년 10월 29일부터 1984년 1월 30일 까지 9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데, 1983년중에 700만석을 수매하고 나머지 100만석은 1984년도 초에 수매하되 모두 현금으로 수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쌀 수매로 농민이 받는 값을 벼로 환산하여 보면 2등 품 기준 54kg들이 가마니당 27,230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1983년산 추곡 수매가격은 최근(1983년 10월) 80kg들이 가마니당 신품종 산지 쌀값인 50,000 원 선보다는 약 5~6천원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단위 : 원)

곡 종	단 량	1 등	2 등	등 외	잠정 등외
메 벼	54 kg	28,510	27,230	24,230	21,730
찰 벼	54 kg	28,510	27,230	24,230	21,730

쌀과 보리수매의 필요성

정부는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적절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양의 쌀과 보리를 매년 수매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벼, 보리 등 주곡은 채소와 달리 1년에 한번 밖에 수확할 수 없읍니다. 반면에 수확을 올리기까지는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각종 영농자재나 노임 등을 구입할 현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등 가계비의 쓰임새도 겹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농자금이나 가계비에 필요한 현금의 일부는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또 다른 일부는 농협의 응자나 사채는 연도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응자나 사채는 연도말까지 상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농민이 같기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들면 너도 나도 쌀을 시장에 내게되어 일시적으로 쌀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농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홍수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쌀값은 자연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비도 전지기 어렵게 됩니다.

정부가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매하고 있는 경우는,
첫째로 적절한 가격으로 대량 수매함으로써 홍수출하기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민의 실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매한 쌀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연중 방출함으로써 쌀이 생산되지 않는 계절 특히 단경기의 쌀값 폭등을 막아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쌀값을 연중 고르게 안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네째로 흥년이 드는 해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쌀 생산비 산출방법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는 물가 수준, 영농비, 정부재정 사정 등을 비롯하여 농가의 쌀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농촌경제를 개선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지역이나 농가별로, 또는 영농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매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직접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영농비의 변동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이용됩니다.

현재 쌀 생산비는 통계법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 126 - 11 - 03 호로 지정되어, 농수산부에서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 생산비 조사가 지정통계로 된 것은 이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쌀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비는 누구나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쌀 생산비를 조사할 수는 있겠으나 조사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농수산부 통계관실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2,000호에 달하는 농가를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기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정된 농가는 생산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장하고 있으며, 조사통계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이 기장한 것을 확인하고, 기장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면접하여 대리 기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기장된 자료는 중앙에 보고되어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집계된 쌀의 가마니당 생산비와 수매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983년의 경우 가마당 생산비는 38,318원이었고 수매가격은 55,970원

(2 등품 기준)입니다. 생산비로 농가 수익성을 산출할 때에는 출하 제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나 일단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가마당 17,652 원의 생산자 수익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논면적 0.6 ha에서 생산되는 34 가마의 쌀에서 생기는 총 수익은 약 60 만원, 월 5 만원 정도가 되며 생산비 중에서 농가의 자가노임 토지나 자본 용역비 등 농가에 되돌아 오는 비용을 포함한 소득 개념으로 볼 때에는 약 133 만원이 되어 월 11 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쌀 생산비와 수매가격 비교

(단위 : 80 kg 들이 2 등품 가마당, 원)

연 도	생 산 비 (1)	수 매 가 격 (2)	(2) - (1)
1978	20,664	30,000	9,336
1979	24,878	36,600	11,722
1980	40,238	45,750	5,512
1981	36,033	52,160	16,127
1982	38,572	55,970	17,398
1983	38,318	55,970	17,652

자료 : 농수산부 통계관실

한편 우리 농가의 소득 구성을 보면은 0.6 ha와 기타 경지를 포함하여 약 1 ha의 경지를 가진 평균 농가의 경우 총 소득은 약 447 만원 ('82년 실적)이며 이 중 약 33%인 149 만원이 쌀농사에서 오는 소득으로 되고 있어서 위에서 생산비로 계산한 소득 추정액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생산비 조사의 결과가 우리 상식에 맞고 신뢰성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생산비가 이보다 높은 농가도 있는 반면 상당히 낮은 농가도 있습니다.

1983년도 가마당 생산비 수준별 농가분포를 보면 최저 23,200원에서 최고 61,600 원까지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생산비 38,318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농사를 지은 사람만 해도 49 %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 생산비는 농가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생산비만을 이야기할 때 일부 농가는 자기가 실제 들인 비용보다 적게 조사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영농조건이 좋지 아니한 산간지대의 농지나 도시 근교의 임차료가 비싼 농지, 한해·수해를 자주 겪게 되는 농지는 평균 생산비와는 더욱 큰 격차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통계조사의 표본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조사와 이를 집계하는 데까지 과학적인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비를 조사하여 우리의 쌀 영농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생산비만이 수매가격의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수매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평균 생산비를 중심으로 널리 펼쳐져 있는 전체 농가의 생산비 분포를 먼저 감안하여 평균 생산비 이상으로 많은 영농비를 들인 농가도 충분히 생산비를 보장받고 실익이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비 이외에도 쌀의 계속적인 증산을 위한 뒷반침, 전체적인 물가 수준, 정부 재정사정, 기타 경제의 운용 방향과도 조화하여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3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의 배경

정부가 어려운 여전에도 불구하고 1983년산 쌀 수매 가격을 55,970 원 (80kg가마니당)으로 하고 수매량을 전년도보다 100만석이 많은 800만석으로 결정한 배경을 알아봅시다.

첫째로 쌀 수매 가격을 1982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고정시킨 것은 물가 안정면을 크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9월말 현재 도

매물가는 전년대비 0.7%가 오히려 떨어졌고, 소비자물가도 2.0% 선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년간 정부의 확고한 경제안정화 의지와 함께 농민, 근로자, 기업 등 국민 각계각층이 고통을 이겨내고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경제로 향하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한 보람을 되돌려 받을 단계에 와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물가오름세 심리의 타성으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물가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며, 물가가 종전보다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 나라 수준은 일본, 대만, 싱가풀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국의 도매물가 수준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싱 가 풀
1982	2.4	0.9	△ 1.5	△ 2.3
1983(1 ~ 8)	△ 1.0	△ 1.9	△ 0.6	△ 2.3

자료 : 농수산부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의 인내로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알차게 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선진대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안정화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도 예산을 동결하고 공무원의 봉급도 현수준으로 묶고 있으며 통화량도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제자리 물가를 실현토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추곡수매가격은 안정된 물가와 영농비 구조속에서 내실 있는 수매가격이 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 생산비를 감안하여 농민의 실익을 보장토록 배려한 것입니다. 우선 농민의 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영농자재값도 금년들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비도 작년과 대

차없는 수준입니다. 1983년 추곡의 경우 서남해안 지방의 벼멸구 피해로 농약대나 살포노임 등 방제비가 전년보다 더 들어갔으나 1983년에는 물격정이 없어 물을 푸는 노력이나 양수비용이 덜 들어갔고 금리가 인하된 것을 상쇄하면 농민의 실제 생산비는 1982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기 1983년도 추곡의 단보당 수량은 전년도보다 약 0.9%증산되고 있어 수매가격을 고정시켰더라도 농민의 실익은 전년도와 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세째로 정부의 주곡 재고사정입니다. 1983년 10월 말 현재 정부의 주곡재고는 쌀 1,050만석, 보리 360만석 등 도합 1,410만석이나 되어 1982년 같은 시기의 1,250만석보다 160만석이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983년 추곡 800만석을 수매하면 정부재고는 무려 2,210만석이나 되어 사상최대의 재고량을 갖게 됩니다. 이는 약 2조 1천억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이며 이같은 재고량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리, 보관료 등 정부양곡 관리비만도 연간 2,900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적자를 발생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1983년 추곡 수매자금은 총 8,46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의 조달을 위해서 정부는 1983년 양곡관리기금에서 3,253억원, 양곡증권 발행으로 5,210억원, 그리고 1984년도 양곡관리기금에서 1,058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량면에서 과잉재고라고 할 만큼 많은 물량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가 생산농민의 소망을 받아들여 1982년도보다 1,058억원 상당의 100만석을 더 수매하는 것은 생산농민의 증산의욕을 뒷받침하고 실익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로 복지농어촌을 앞당겨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특적자의 발생과 해소

그동안 정부는 생산자로부터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주곡을 수매하여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수매가격에 보관비와 수송비 등 조작비를 합한 판매원가 대로 양곡을 판매한다면 정부로서는 적자부담이 없어지겠지만 소비자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양곡을 판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적자를 「양특적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3년도 수매하는 쌀 2등품 80kg 한 가마의 수매가격은 55,970 원이었고, 여기에 보관비 등 조작비 9,358원을 더 하면 판매원가는 65,328 원이 되지만 이를 52,280 원에 판매 함으로써 가마당 13,048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보리쌀은 수매가격 33,780 원에 조작비 9,473 원을 합하면 판매원가가 43,253 원이 되지만 방출가격은 불과 28,000 원으로 정부의 손해는 가마당 15,253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부터 1982년도 말까지 발생한 양특적자의 총액은 무려 1조 2천억원이나 되며, 1983년 한 해에만도 2,900억원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특적자는 정부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부예산이 부족하여 우리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 아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잘 안되고 실업자도 늘

게 되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양특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시켜 갈 계획입니다.

가마당 양특적자(1983년 추산)

<u>쌀한가마 (80 kg)</u>		<u>보리쌀 한가마 (76.5kg)</u>	
65,328 원		43,256 원	
수매 가 + 조작비 =원 가	 방출 가 53,280 원	 정부손해 13,048 원	 정부손해 15,253 원
정 부	소 비 자	정 부	소 비 자

양특적자의 해소를 위해 첫째, 종래의 낮은 쌀 방출가격을 점차 수매 가격에 조작비를 가산한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갈 것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 당분간은 보리쌀과 혼합곡의 방출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1984년부터는 이미 발표한 대로 양특적자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 나갈 계획이며 1984년에는 우선 3,000억원이 충당될 것입니다. 이는 종래에 없던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째로는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화하여 조작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가공방법 개선 및 가공 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3 쌀 수매 실시요령

농가별 수매량은 부락별 새마을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배정량을 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매일자를 부락별로 사전에 통지하여 농민의 출하준비를 돋고 수매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추수기의 잣은 비 때문에 벼 건조 조제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여 좋은 등급으로 소득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예비검사 요령에 의해 부락별로 출하전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등급으로 좋은 값을 받도록 하며 수매장에서 불합격품 발생 등으로 재조제하거나 다시 가져가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0.5 ha 미만의 영세농과 재해농가가 출하하는 벼는 우선 수매 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매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되 영농자금 등 다른 자금을 농민 여러분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일이 일체 없을 것입니다. 출하농민이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당일 현장에서 재검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판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영농기 이전인 금년(1983년)초에 이미 발표한대로 그동안 메벼보다 수매가격이 높았던 찰벼의 수매가격은 메벼와 같은 값으로 하여 20만석 만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찰벼는 수요가 많아 매년 일부를 수입하여 수요에 충당해 왔으나 최근 다수성 신품종의 대량 보급으로 생산이 크게 늘은 반면 수요는 큰 변동이 없어 지금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고만으로도 2년 넘게 방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내년도 추곡수매부터는 찰벼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과 복합영농

정부는 1983 추곡수매 방침을 발표하면서 농촌에 대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내실있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 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축산, 특용작물, 원예 등 복합영농의 확대 정착으로 농업소득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복합영농 시책에 잘 호응하여 농업소득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쌀 수매 값을 올려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지난 60년대와 70년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서 많이 변화 하였습니다. 즉 쌀과 보리에 치우쳐 있다가 축산, 원예, 특용작물 등의 도입으로 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품종개량 및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생산증대와 품질향상이 이루어지고, 상품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의 목적도 자가소비나 생계농업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 농가소득면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국가의 자원 이용면에서는 경지 이용률이 낮아져 국토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국가적인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영농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복합영농이란 농업부문간의 보완 또는 복합관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노동배분의 평균화 그리고 가족노동의 완전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합영농의 기본유형은 「쌀, 보리 등 주곡+특화작물 +보완작물」로

되어 있는데 특화작물 및 보완작목의 순위는 ① 참깨, 땅콩, 유채, 맥주
맥, 호프, 옥수수 ② 양잠 ③ 마늘, 고추 ④ 지역특화가 이미 정착된 품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복합영농 추진에 있어 때때로 과소 또는 과잉생
산으로 생산자나 물가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협
조할 사항을 들어 보면

첫째로 정부를 신뢰하고 계획생산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밀집된 주산단지에서는 정보 교환으로 과잉파종 여부를 확인하
고 농민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같은 지대에서 같은 작목을 생산하더라도 파종기를 조절하여 되
도록 출하 시기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農漁民 經濟教育의 現場

1983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 : 1979年 5月 25日 第5 - 10號

印刷處 : 株式會社 文 苑 社
723-6068, 722-6053
